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2025. 10.
Vol.15



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Vol.15.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2025. 10.

대 표 조 회 경
연 구 원 채 일 택
한 은 주
양 오 늘

<목차>

1. 서론	6
가. 보고서의 배경	6
나. 보고서의 목적	7
2. 비인간인격체의 개념	7
가. 정의	7
나. 생물학적 특성	8
1) 고래목	8
2) 코끼리	9
3) 대형 유인원	10
다. 비인간인격체 담론의 철학적 배경	11
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문제	12
가. 사육 현황	12
1) 고래목	12
2) 코끼리	14
3) 대형 유인원	15
나. 감금사육으로 인한 부작용	17
1) 우울증, 정형행동 등 심리적 병리	17
2) 생태적 습성 미발현으로 인한 신체적 병리	19
다. 감금사육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된 사건들	21
1) 코끼리 타이크(Tyke) 사건	21
2) 범고래 케이코(Keiko) 사건	21
3) 범고래 킬리쿰(Tilikum) 사건	22
4) 고릴라 하람베(Harambe) 사건	23
4. 국내 법령 및 지침 검토	23
가. 시설	23

나. 동물 관리	25
5. 감금사육의 중단 방안 검토	33
가. 전시 규제	33
1) 고래류 전시 규제 관련 입법례	33
2) 대형 유인원 전시 규제 관련 입법례	36
3) 코끼리 전시 규제 관련 입법례	37
나. 보호구역(Sanctuary) 모델	40
다.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	42
1) 개념	42
2) 비인간 동물에 적용한 사례	42
가) 수이사 사건	43
나) 세실리아 사건	43
다) 산드라 사건	43
라) 에스트렐리타 사건	43
라. 법인격 부여	47
1) 개념	47
2) 주요 사례	48
6. 결론 및 정책 제언	51
가. 결론	51
나. 정책 제언	52
[참고문헌]	53
[부록]	58
가. 영국 동물원 인허가법에 따른 코끼리 관리 기준	58
나. 영국 동물원 인허가법에 따른 대형유인원 관리 기준	63
다. 침팬지 수이사 인신보호영장 판결 주문	67
라. 침팬지 세실리아 인신보호영장 판결 주문	69

마. 오랑우탄 산드라 인신보호영장 판결 주문	71
바. 거미원숭이 에스트랄리타 인신보호영장 판결 주문	71

<표 차례>

[표 1] 동물복지와 동물권	11
[표 2] 세계 각국의 고래류 사육 현황	12
[표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 중 코끼리목 부분	24
[표 4] 국내 동물원 코끼리 야외방사장 크기	25
[표 5] 환경부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의 코끼리 사육 기준	26
[표 6] 환경부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의 침팬지, 오랑우탄, 수마트라오랑우탄 사육 기준	27
[표 7] 세계 고래류 사육 금지 현황	34
[표 8] 오하이시 조례 제940호	49

<그림 차례>

[그림 1]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 중인 핫핑크돌핀스	6
[그림 2] 병코돌고래와 흑등고래의 뇌 시상측 단면	8
[그림 3] 아프리카코끼리, 병코돌고래, 인간, 쥐의 뇌 관상면 단면	9
[그림 4] 서울대공원에서 사육 중인 코끼리	15
[그림 5] 침팬지 티파티	16
[그림 6] PG tips 광고 속의 침팬지	17
[그림 7] 정형행동을 하고 있는 대구 달성공원의 코끼리	19
[그림 8] 도심을 배회 중인 코끼리 타이크	21
[그림 9] 인간과 범고래의 우정을 주제로 한 영화 '프리 윌리' 속 한 장면	22
[그림 10] 2009년 시월드에서 공연 중인 범고래 탈리쿰	22
[그림 11] 해자로 떨어진 아이를 잡고 있는 고릴라 하람베	23
[그림 12] 대구 달성공원의 코끼리 사육장	25
[그림 13] 네덜란드 아펜헬(Apenheul Primate Park)	31

[그림 14] 호주 웨리비 오픈레인지주(Werribee Open Range Zoo)의 엘리펀트 트레일	31
[그림 15] 스위스 취리히동물원의 캥크라찬 코끼리공원(Kaeng Krachan Elephant Park)	32
[그림 16] 싱가포르 주(Singapore Zoo)의 오랑우탄 전시시설	32
[그림 17] 거제씨월드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벨루가	35
[그림 18] 2024년 8월 거제씨월드의 고래류 번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동물자유연대	35
[그림 19] 생태설명회를 가장한 쇼에 동원되고 있는 돌고래들	36
[그림 20] 김란영, “관절염, 욕창, 이상행동...동물원 코끼리의 현실”	38
[그림 21]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의 마지막 코끼리 루루	39
[그림 22] 앙티브 마린랜드 잔류 돌고래들의 이송 방안을 검토한 프랑스 정부 보고서	41
[그림 23] 구마모토 생츠퍼리	41
[그림 24] White Oak Conservation Foundation의 코끼리 보호구역	42
[그림 25] 오랑우탄 산드라	44
[그림 26] 거미원숭이 에스트렐리타	45
[그림 27] 스페인 다큐멘터리 영화 ‘비인간인격체(Persona [No]Humana)’	46
[그림 28] 비인간동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47

1. 서론

가. 보고서의 배경

높은 수준의 감각과 자각 능력을 지닌 코끼리, 유인원, 고래류 등 비인간인격체에 대해 도덕적 고려를 기울이고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의 확산

- 미국의 환경철학자 토머스 I. 화이트(Thomas I. White) 교수는 2007년 저서 『In Defense of Dolphins: The New Moral Frontier』에서 인간(human)과 인격체(person)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돌고래가 자의식을 지니고 도덕적 판단을 수행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돌고래를 인격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신경생물학, 철학, 동물행동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인간인격체(Non-human person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2013년 5월 인도 환경산림부는 돌고래 수족관 설치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돌고래는 '비인간인격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 돌고래를 공연 목적으로 가두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¹⁾
- 국내에서도 2013년 9월 6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돌고래 포획 금지 촉구 집회에서 비인간인격체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일본 정부의 고래 포획을 비판하며 '인류가 아닌 사람'에 대한 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림 1]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 중인 핫핑크돌핀스 (출처: 서울신문)

1) “Indi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Policy Prohibiting Dolphinariums,” *Eco Jurisprudence Monitor*, <https://ecojurisprudence.org/initiatives/policy-on-establishment-of-dolphinarium/>.

나. 보고서의 목적

비인간인격체에 대한 감금사육의 법적 금지를 위한 이론적 기반과 제도 개선의 방향 제시

- 국내 동물복지 담론은 주로 반려동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고도화된 인지능력을 지닌 동물들이 처한 생태학적·행동학적 조건과 현실의 열악한 대우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도덕적 고려 수준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비인간인격체 개념에 대한 국제적 논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각에서는 비인간인격체 개념이 인간 중심적 정당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동물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보호 사이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며, 모든 생명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현행 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비판적 관점 역시 유념하고 있으며, '비인간인격체' 담론을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배려의 범주를 확장하여 도덕 공동체의 외연을 넓혀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인식하며, 현재 인간 활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고등 인지 동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2. 비인간인격체의 개념

가. 정의

- 비인간인격체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만이 배타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자의식, 인지 능력, 공감 능력 등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밝혀진 인간 외의 지적 생명체를 일컫는다.
- 인간(human)이 외양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해 정의하는 생물학적 범주라면, 인격체(person)는 사고나 감정, 성격, 자의식 등 주체성을 논하는 철학적 범주에 속한다.³⁾
- 학계에서 거론되는 대표적 비인간인격체에는 대형 유인원, 고래목, 코끼리과 동물 등이 속한다.

2) Kendra Coulter, "A Critical Assessment of Bill S-203, Ending the Captivity of Whales and Dolphins Act: Challenging the Exclusivity of Anthropocentrism and Science-Based Justifications," *Canadian Journal of Comparative and Contemporary Law* 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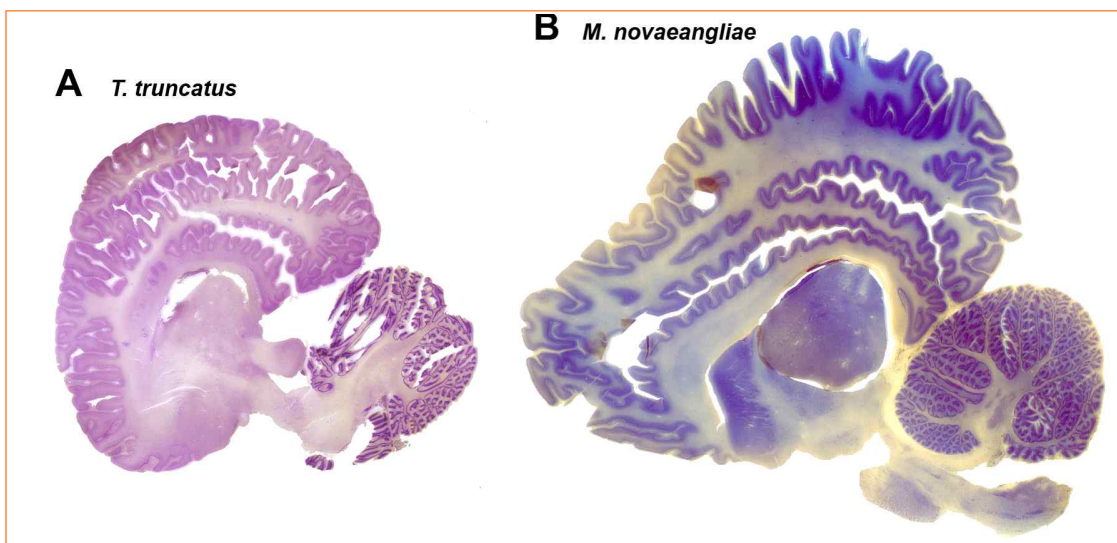
3) Kovacs R (2017) Acknowledging Non-Human Persons: Reconstituting Our Conception of Personhood. MA thesis, Ryerson University.

나. 생물학적 특성

유인원, 코끼리, 고래류는 공통적으로 자의식, 도덕 감수성, 사회적 유대, 복잡한 감정 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심리·인지 특성을 보인다.

1) 고래목

- 고래목 동물의 뇌는 복잡성과 처리 능력 면에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돌고래 뇌의 신체 대비 질량은 인간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뇌 피질은 인간과 유사한 복잡한 주름을 가지고 있다.⁴⁾



[그림 2] 병코돌고래(A)와 혹등고래(B)의 뇌 시상측 단면

- 큰돌고래와 범고래는 동물의 자기인식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거울 실험'⁵⁾을 통과하였다. 특히 큰돌고래의 경우 자기인식 능력이 사람보다도 빨리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미국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진행된 거울실험에서 큰돌고래는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을 인식하였는데, 사람의 경우 생후 18~24개월에야 거울실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형성된다.⁶⁾

4) Marino L, Connor RC, Fordyce RE, Herman LM, Hof PR, Lefebvre L, et al. (2007) Cetaceans Have Complex Brains for Complex Cognition. PLoS Biol 5(5): e139. <https://doi.org/10.1371/journal.pbio.005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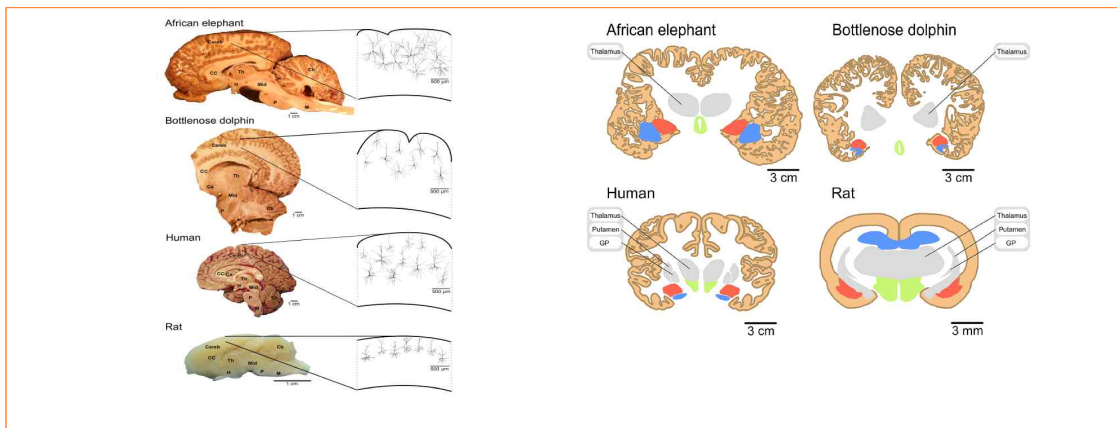
5) '거울 실험(Mirror Test)'은 1970년 생물심리학자 고든 갤럽(Gordon Gallup Jr.)이 고안한 동물의 자기 인식(self-recognition) 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으로, 동물의 몸에 표시(mark)를 해두고 그것을 거울을 통해 인식해 제거하려는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한다. 이는 동물이 자아 개념(self-concept)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간주된다. Gordon G. Gallup Jr., "Chimpanzees: Self-Recognition," *Science* 167, no. 3914 (1970): 86-87,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ence.167.3914.86>.

6) R. Morrison and D. Reiss, "Precocious development of self-awareness in dolphins," PLoS ONE 13, no. 1 (2018): e018981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89813>.

- 고래목 동물은 매우 사회적으로, 범고래는 50~100마리의 무리로 이동하며 대형 돌고래 사회집단은 대개 3세대로 구성된다.⁷⁾
- 인간 사회와 유사하게 문화적 전통을 세대 간에 전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잡한 사회 구조와 높은 수준의 감정적 정교함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최근 연구에서 야생에서 구출된 한 돌고래는 호주의 돌고래 수족관에서 회복 과정 3주 동안 꼬리로 걷는 법을 배웠는데, 연구진은 이 돌고래가 야생으로 돌아간 뒤 야생 돌고래들 사이에서 꼬리로 걷는 기술이 퍼지는 것을 발견했다⁸⁾. 이처럼 고래와 돌고래의 삶의 다양한 측면은 본능이나 유전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단 내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에 의해 형성된다.⁹⁾
- 돌고래 휘슬 시퀀스는 인간 언어에서 나타나는 Zipf 법칙(자주 쓰이는 단어는 짧고 반복되고, 드물게 쓰이는 단어는 길고 복잡함)과 유사한 빈도-복잡도 구조를 지니며, 정보 압축성과 규칙성이 존재한다.¹⁰⁾

2) 코끼리

- 코끼리와 고래류는 크고, 활동 범위가 넓으며, 수명이 길고, 인지적으로 정교하며, 사회성이 높고, 뇌가 큰 포유류라는 여러 특징을 공유한다.¹¹⁾



[그림 3] 아프리카코끼리, 병코돌고래, 인간, 쥐의 뇌 관상면 단면

- 7) Kendra Coulter, "A Critical Assessment of Bill S-203, Ending the Captivity of Whales and Dolphins Act: Challenging the Exclusivity of Anthropocentrism and Science-Based Justifications," *Canadian Journal of Comparative and Contemporary Law* 8 (2022): 17.
- 8) Mike Bossley 외, "Tail walking in a bottlenose dolphin community: the rise and fall of an arbitrary cultural 'fad,'" *Biology Letters* 14, no. 9 (2018): 20180314, <https://doi.org/10.1098/rsbl.2018.0314>.
- 9) Hal Whitehead and Luke Rendell, "Culture in Whales and Dolphin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4, no. 2 (2001): 309-324, <https://doi.org/10.1017/S0140525X0100396X>.
- 10) Ramon Ferrer-i-Cancho and Brenda McCowan, "The Span of Correlations in Dolphin Whistle Sequences," *Journal of Statistical Mechanics: Theory and Experiment* 2012, no. 06 (2012): P06002, <https://doi.org/10.1088/1742-5468/2012/06/P06002>.
- 11) Bob Jacobs, Heather Rally, Catherine Doyle, Lester O'Brien, Mackenzie Tennison, and Lori Marino, "Putative Neural Consequences of Captivity for Elephants and Cetaceans," *Reviews in the Neurosciences* 33, no. 4 (2021): 439-465, <https://doi.org/10.1515/revneuro-2021-0100>.

- 야생에서 코끼리는 매일 평균 15km에서 200km까지 이동하는 습성을 지녔으며,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환경 탐색 활동을 한다.(Kaley and Slade 2002; Clubb and Mason 2002)¹²⁾
- 고도로 발달한 청각과 후각을 기반으로 의사소통하며, 수백 가지의 의미를 지닌 자세, 몸짓 및 발성을 포함하는 행동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조직적 이동, 공동육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모계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간다(Schulte, 2000; Vidya & Sukumar, 2005). 한 무리의 구성원은 평균 10~12마리이며 대부분 친족 관계의 성인 암컷과 그 자손으로 구성된다(Estes, 1991; Garai, 1992; Vidya & Sukumar, 2005). 일반적으로 최고령 암컷이 모계장이 되며 환경과 자원에 대한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 무리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Freeman et al, 2004; Spinage, 1994; Vidya & Sukumar, 2005).
- 코끼리 사회는 분열-융합을 반복하며, 최대 수백 마리의 코끼리로 구성된 더 큰 집단과 상호작용한다(Poole & Moss, 2008; de Silva, Ranjeewa & Kryazhimskiy, 2011). 무리 간의 대립은 드물며, 이는 확립된 지배적 관계가 기억되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체로 단독 생활을 하는 성인 수컷 코끼리 역시 동종 개체와 복잡한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며 살아간다(Hartley, Wood & Yon, 2019).
- 고통, 기쁨, 상실, 스트레스 등을 느끼며, 무리 구성원 간의 사회적 유대와 애도 반응이 관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 대한 슬픔 표현, 해골이나 상아를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 행동 등이 보고되었다.¹³⁾

3) 대형 유인원

- 생물 분류체계상 영장류의 한 과인 사람과(Hominidae)에 포함되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보노보 등 대형 유인원을 일컫는다.
- 자기 인식 능력, 동정심, 합리성, 유머 감각, 발명성은 물론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언어 사용력, 숫자 개념, 도구 제조 능력, 도덕적 인식능력 등을 지니고 있다.¹⁴⁾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 (Frans de Waal)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것으로 여겨졌던 능력 중 침팬지에게 없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⁵⁾

12) Bob Jacobs, Heather Rally, Catherine Doyle, Lester O'Brien, Mackenzie Tennison, and Lori Marino, "Putative Neural Consequences of Captivity for Elephants and Cetaceans," *Reviews in the Neurosciences* 33, no. 4 (2021): 439-465, <https://doi.org/10.1515/revneuro-2021-0100>.

13) Europ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a (EAZA), *EAZA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Elephants* (Amsterdam: EAZA Executive Office, 2020).

14) Steven M. Wise, *Rattling the Cage: Toward Legal Rights for Animals* (New York: Perseus Books, 2000), 163-237; Roger S. Fouts, *Submission of Dr. Roger S. Fouts to the Primary Production Committee on the Animal Welfare Bill (No. 2)* (October 20, 1998).

15) Frans de Waal, "Putting the altruism back into altruism: the evolution of empathy,"

- 합당하지 않은 보상을 거부하고 싸움에서 진 사람을 위로하는 등 이타주의, 갈등 해결, 협력, 공감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 관여한다.¹⁶⁾
-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시간관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예상해 현재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연구에서 침팬지가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다가, 그곳에서 흰개미를 잡거나 견과류를 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미래의 필요를 예상하여 먹이활동을 계획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Osvath y Osvath 2008; Osvath 2010; Osvath y Karvonen 2012; Sanz, Call, y Boesch 2013).
- 높은 사회성은 모든 영장류 동물의 공통적 특성이다. 사회적 유대(social bonds)는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개체일수록 면역력·생존율 높으며 고립되거나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는 개체는 코르티솔이 상승하며 질병 취약성이 증가한다.¹⁸⁾

다. 비인간인격체 담론의 철학적 배경

- 비인간인격체 논의는 동물복지 대 동물권이라는 역사적 동물운동의 구도 속에서, 동물의 권리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동물권 중심의 흐름에 속한다. 즉 복지를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비인간인격체의 감금·실험·전시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입장이다.¹⁹⁾

동물복지	동물권
인간의 필요 하에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는 윤리적 틀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주체로 보고, 이용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

[표 1] 동물복지와 동물권

- 미국 철학자 톰 리건(Tom Regan)은 모든 '삶의 주체(subject-of-a-life)'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이들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2008): 279-300,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9.103006.093625>.

16) Frans B.M. de Waal and Malini Suchak, "Prosocial primates: selfish and unselfish motiva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65, no. 1553 (2010): 2711-2722, <https://doi.org/10.1098/rstb.2010.0119>.

17) Rafael Cervera Castellano, "Will the Great Primates Be Recognized as Non-Human Persons in the 21st Century?" *Stoa* 15, no. 29 (2024): 45-59,
<https://doi.org/10.25009/st.2024.29.2768>.

18) Lauren M. Robinson and Alexander Weiss, eds., *Nonhuman Primate Welfare: From History, Science, and Ethics to Practice* (Cham: Springer Nature, 2023),
<https://doi.org/10.1007/978-3-030-82708-3>.

19) Lauren M. Robinson and Alexander Weiss, eds., *Nonhuman Primate Welfare: From History, Science, and Ethics to Practice* (Cham: Springer Nature, 2023),
<https://doi.org/10.1007/978-3-030-82708-3>.

의 정의에 따르면, '신념과 욕구를 가지며 지각과 기억이 있고 미래, 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쁨과 고통의 감정을 느끼고 선호와 복지를 위한 관심을 가지며 목표를 향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되는 심리·신체적 동일성을 지니며 개인적 복지가 그 존재의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존재'는 삶의 주체로 간주되며,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²⁰⁾

- 피터 싱어(Peter Singer), 톰 리건(Tom Regan) 등 철학자들은 동물과 유사한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는 일부 인간도 도덕적으로 존중되는 것과 같이, 그 기준을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영아,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의식이 없거나 자율성이 없는 노인 또는 환자들처럼 인지 능력이나 자율성, 언어 능력 등이 제한된 주변부 인간이 권리를 가진다면, 감각과 정서, 기억, 선호 등을 가진 동물도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3.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문제

가. 사육 현황

역사적으로 고래, 코끼리, 대형 유인원류 동물은 외형적으로 인간의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능을 지닌 특성으로 인해 훈련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전시시설에서 감금 사육되며 쇼 등에 동원되어 왔다.

1) 고래목

- 아래 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57개국 347개의 시설에서 고래와 돌고래를 사육하고 있다²¹⁾. 사육되는 개체 중 80%는 돌고래이며, 그 중 대다수는 병코돌고래이다.

국가	시설 수	개체 수
북아메리카		
미국	28	447
캐나다	1	40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2	24
콜롬비아	2	11

20)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21) 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 (WDC), "How Many Whales and Dolphins Are in Captivity?" WDC, accessed July 17, 2025, <https://us.whales.org/how-many-whales-dolphins-in-captivity/>.

페루	1	1
베네수엘라	1	11
중앙아메리카·카리브해		
바하마	4	94
버뮤다	1	10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1	15
쿠바	10	81
퀴라소	2	27
도미니카 공화국	5	63
그랜드 케이맨	2	20
온두라스	1	7
자메이카	4	23
멕시코	29	240
세인트키츠	1	10
유럽		
벨기에	1	7
불가리아	1	5
덴마크	1	3
프랑스	2	25
조지아	1	12
독일	2	14
그리스	1	9
이탈리아	3	23
리투아니아	1	16
몰타	1	5
네덜란드	1	31
포르투갈	2	35
루마니아	1	2
스페인	12	109
스웨덴	1	11
튀르키예	8	323
우크라이나	7	41
아시아		
중국	99	1306
인도네시아	5	28
일본	53	528
북한	1	6
파키스탄	2	6
필리핀	1	12
러시아	15	85
싱가포르	1	26
대한민국	5	23
대만	2	17
태국	4	17
베트남	3	8
호주·오세아니아		
호주	2	37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3	3
팔라우	1	7
아프리카·중동		

바레인	1	2
이집트	2	8
이란	3	11
이스라엘	1	8
모로코	1	5
사우디아라비아	1	5
남아프리카공화국	1	10
아랍에미리트	2	42

[표 2] 세계 각국의 고래류 사육 현황

- 국내에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아쿠아플라넷, 한화 아쿠아플라넷,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벨루가 등 고래목 동물을 전시하고 있다.

2) 코끼리²²⁾

- 202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17,000마리의 코끼리가 동물원, 서커스, 보호소, 작업·관광 캠프 등 다양한 사육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약 365마리의 코끼리가 있으며, 이 중 약 262마리는 동물원에, 약 47마리는 서커스나 기타 상업시설에, 21마리는 보호구역에, 그리고 약 35마리는 기타 시설(예: 보호센터)에 있다.
-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코끼리는 약 1,627마리이다. 이중 아시아 지역 동물원에서 가장 많이(약 723마리) 사육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약 499마리), 북미(약 286마리), 라틴 아메리카(약 70마리), 호주(약 26마리), 아프리카(약 25마리) 순이다. 이중 최대 95%의 사육 시설은 동물 복지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 면적 및 사육 환경, 코끼리들의 운동량, 영양 상태, 그리고 인간 상호작용 수준 측면에서 시설 간에 상당한 수준 차이를 보인다.
- 국내에서는 서울대공원, 우치동물원, 달성공원, 대전오월드, 어린이대공원, 전주동물원 등에서 코끼리를 전시하고 있다.

22) Catherine Doyle, Heather Rally, Lester O'Brien, Mackenzie Tennison, Lori Marino, and Bob Jacobs, "Continuing Challenges of Elephant Captivity: The Captive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Welfare Implications," PeerJ 12 (2024): e18161, <https://doi.org/10.7717/peerj.18161>.



이름 키마	성별 암컷	생년월일 1982.01.11	특징 코로 바닥을 세게 치거나 으르렁 땡수 같은 소리로 다른 코끼리들을 불러 모아요
몸무게 3,948kg(2025년 6월 측정)	좋아하는 것 황토 목욕, 칭찬	싫어하는 것 갑작스러운 큰 소리	매력포인트 보석 같은 호박색 눈



이름 수젤라(옛 스리랑카 여왕의 이름이에요)	성별 암컷	생년월일 2004.08.23	특징 겁이 많아 놀리면 뿌우우! 큰 소리를 내 가족들을 불러요. 가족들이 모이면 안정을 찾아요.
몸무게 3,270kg(2025년 6월 측정)	좋아하는 것 물물교환, 사육사와 함께하는 긍정강화훈련	싫어하는 것 주사기	매력포인트 큰 눈망울

[그림 4] 서울대공원에서 사육 중인 코끼리 (출처: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3) 대형 유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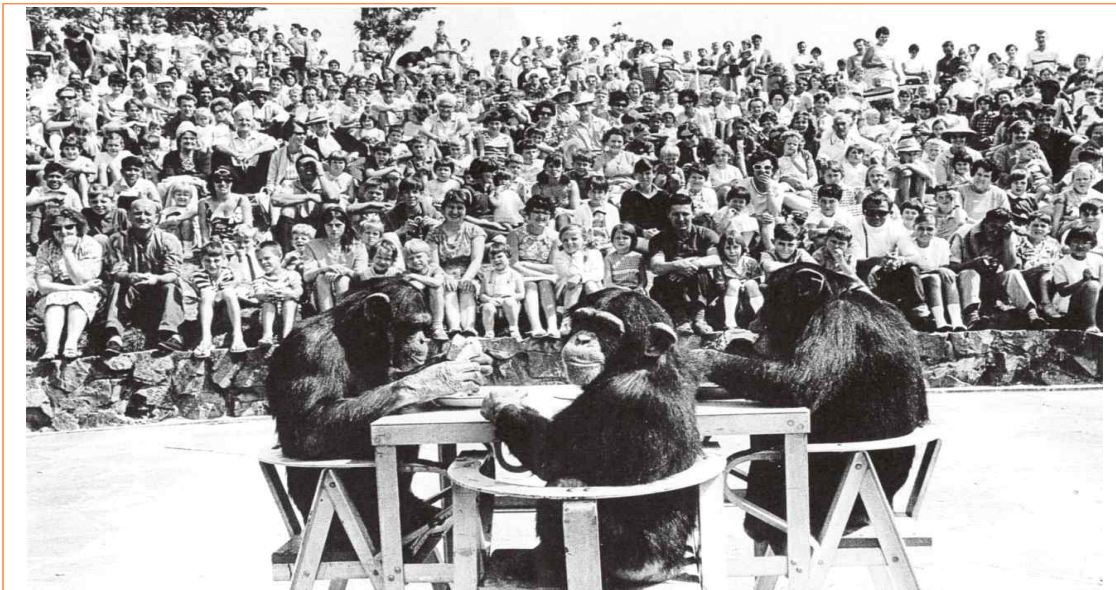
- 침팬지의 경우 전 세계 사육 개체수에 대해서는 공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 기준 AZA(미국 동물원·수족관 협회) 인증 동물원에서 약 260마리의 침팬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미국 전체(동물원·연구기관·사육시설 등 포함)에서는 약 1,382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에서는 48개 시설(46개 동물원

포함)에서 302마리를 사육 중이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침팬지를 보유해 왔다.²³⁾

- 고릴라와 오랑우탄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로 IUCN(국제자연보전 연맹) 보전 등급 CR(심각한 멸종위기)에 해당하는 종으로, 대부분 교육 및 보전을 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내에서는 대전 오월드에서 침팬지를, 서울대공원에서 침팬지·고릴라·오랑우탄을, 에버랜드 주토피아에서 침팬지·오랑우탄을 사육 및 전시하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 아라마루 동물원에서도 오랑우탄 두 마리를 신규로 반입하였다.

※ 침팬지 티 파티

- 1926년 런던동물원을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런던, 시드니, 뉴욕, 모스크바, 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 동물원에서 침팬지에게 인간의 옷을 입히고 음식과 음료가 담긴 테이블을 제공하는 '침팬지 티 파티' 전시²⁴⁾가 성행하기도 했다.
- 영국의 차 브랜드 PG Tips에서 1956년부터 2002년까지 침팬지가 티파티를 하는 광고를 방영하였다. 광고 속에서 침팬지는 가구를 옮기는 남자나 빨래를 다림질하는 여자 등 인간 캐릭터를 연기하였다.
- 이후 윤리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침팬지 티파티는 중단되었다.



[그림 5] 침팬지 티파티 (출처: Kennedy Warne, “Sugar, Dear,” New Zealand Geographic)

23) Judy Che-Castaldo et al., “Comparative survival analyses among captive chimpanzees (Pan troglodytes) in America and Japan,” *PeerJ* 9 (2021): e11913, PMCID: PMC8364750, <https://doi.org/10.7717/peerj.11913>.

24) “Chimpanzees’ Tea Party,” *Wikipedia*, last modified July 29, 2023, https://en.wikipedia.org/wiki/Chimpanzees%27_tea_party.



[그림 6] PG tips 광고 속의 침팬지 (출처: BBC)

나. 감금사육으로 인한 부작용

1) 우울증, 정형행동 등 심리적 병리

- 감금된 고등 인지 동물들은 복잡한 육체적·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높은 수준의 행동 및 신체 병리를 겪게 된다. 감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사회적 고립, 움직임 제한, 자극 부족, 인간과의 강제 상호작용, 소음, 낮선 환경, 공연 훈련 등)은 발달된 대뇌피질과 복잡한 변연계 구조를 가진 고등 인지 동물의 신경계에

만성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변연계 및 전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한 불안, 공격성, 우울, 이상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물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래류가 생활하는 수족관은 자연적 활동반경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고 구조물이 단순해 음향 반향(에코) 현상이 심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적 격리 또는 부적절한 사회 구성이 이뤄지고 인간과의 지속적 접촉, 공연을 위한 훈련 등이 반복됨에 따라 고래류의 신경 및 심리 건강이 악화되어(Waples and Gales 2002; Visser et al. 2016) 이들은 반복적인 수영, 수조 벽 물어뜯기 등 정형행동²⁵⁾을 하며 일부는 우울증의 증상을 보인다.²⁶⁾
- 코끼리의 정형행동은 사지 흔들기, 왔다 갔다 하기, 같은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걷기, 사지 또는 머리 부딪히기 등 자기 자극 행동, 코 빨기, 막대 물기 등으로 나타난다 (Glaeser et al., 2021). 동물원 내 코끼리의 47%에서 85% 정도가 정형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일상 활동 에너지의 최대 20%를 소모할 수 있다(Mason & Latham, 2004; Mason & Veasey, 2010).
- 연구시설 내의 침팬지들은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유사한 증상 및 우울증까지도 경험한다. 분리된 새끼 침팬지들은 신원 위기로 인한 추가적 외상을 겪으며, 이는 다른 침팬지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한다.²⁷⁾

○ 감금 환경은 고등 인지 동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유대를 단절시킨다. 코끼리의 경우 자연에서 하루 10km 이상 이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반해 포획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활동 공간이 0.017-6.937km²에 불과해 충분한 거리 이동 및 동종 간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²⁸⁾ 또한 코끼리는 본래 대규모 가족 단위로 생활하지만 사육 환경에서는 대개 혈연관계가 없는 소규모 집단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야생 코끼리의 집단 응집력의 중요한 원천인 어린 개체와 접촉할 기회를 차단한다. 이로 인해 암컷은 모성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없으며, 이는 번식 후 정상적 모성 발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Hutchins, 2006).

25) 정형행동(stereotypy)이란 뇌의 운동 제어 시스템의 근본적인 조절 장애로 인해 촉발되는 과도하고 무의미한 움직임을 말한다. Jacobs et al.

26) Bob Jacobs, Heather Rally, Catherine Doyle, Lester O'Brien, Mackenzie Tennison, and Lori Marino, "Putative Neural Consequences of Captivity for Elephants and Cetaceans," *Reviews in the Neurosciences* 33, no. 4 (2021): 439-465, <https://doi.org/10.1515/revneuro-2021-0100>.

27) Michelle Thew, Jarrod Bailey, Michael Balls, and Michelle Hudson, "The Ban on the Use of Chimpanzees in Biomedical Research and Testing in the UK Should Be Made Permanent and Legally Binding," *Alternatives to Laboratory Animals* 40, no. 1 (March 2012): 3-8, <https://doi.org/10.1177/026119291204000102>.

28) Bob Jacobs, Heather Rally, Catherine Doyle, Lester O'Brien, Mackenzie Tennison, and Lori Marino, "Putative Neural Consequences of Captivity for Elephants and Cetaceans," *Reviews in the Neurosciences* 33, no. 4 (2021): 439-465, <https://doi.org/10.1515/revneuro-2021-0100>.



[그림 7] 정형행동을 하고 있는 대구 달성공원의 코끼리

2) 생태적 습성 미발현으로 인한 신체적 병리

- 자연 서식지와 다른 환경은 고등 인지 동물에게 여러 신체적 병리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끼리의 걷기 활동은 대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면역 체계의 효과를 높이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육 환경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제한된다(Jacobs et al., 2021; Morfeld & Brown, 2017). 이로 인한 운동 부족은 코끼리의 관절염, 비만, 발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Hutchins, 2006; Lemonick, 2006; Veasey, 2006). 조사에 따르면 유럽 동물원 코끼리의 98.5%, 북미 동물원 코끼리의 67.4%가 발 이상을 보였으며²⁹⁾ 북미 AZA 인증 동물원 65곳의 코끼리 중 약 4분의 3이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판정되었다.³⁰⁾

29) Born Free USA, *Elephants in Zoos: A Legacy of Shame* (Washington, DC: Born Free USA, 2022), accessed July 18, 2025,

<https://www.bornfreeusa.org/campaigns/animals-in-captivity/elephant-report/>

30) Catherine Doyle, Heather Rally, Lester O'Brien, Mackenzie Tennison, Lori Marino, and Bob Jacobs, "Continuing Challenges of Elephant Captivity: The Captive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Welfare Implications," *PeerJ* 12 (2024): e18161, <https://doi.org/10.7717/peerj.18161>.

- 동물원 코끼리의 평균수명은 자연 수명인 6~70세에 한참 못 미치는 16.9~18.9년에 불과하며(Clubb et al., 2008)³¹⁾ 결핵,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 야생 코끼리 사회에서 미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 동물원에서 흔하고 종종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사육 코끼리의 유아 사망률은 40%로, 이는 야생보다 약 3배 높은 수치이다.³²⁾
- 사육되는 암컷 코끼리는 수정 및 출산율이 낮고, 이로 인해 현재의 사육 개체군은 자가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Schulte, 2000). 생식 가능한 나이의 암컷 중 10% 미만만이 출산하며, 약 30%의 암컷은 난소 활동이 불규칙하거나 무배란(acyclic) 상태를 보인다.
- 포획된 고래류는 식단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대사 질환을 겪으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질환 등이 포함된다. 소화기 및 장 질환(위염, 궤양, 장 염전 등)은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³³⁾
- 1995년 연구(Small & DeMaster)에 따르면, 사육 범고래의 연간 사망률은 6.2%로, 야생 범고래의 사망률 2.4%보다 약 2.5배 높았다³⁴⁾. 사육 벨루가는 절반 가량이 야생 대비 절반 이하의 기대수명인 8세 이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⁵⁾

31) Catherine Doyle, Heather Rally, Lester O'Brien, Mackenzie Tennison, Lori Marino, and Bob Jacobs, "Continuing Challenges of Elephant Captivity: The Captive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Welfare Implications," *PeerJ* 12 (2024): e18161, <https://doi.org/10.7717/peerj.18161>.

32) Born Free USA, *Elephants in Zoos: A Legacy of Shame* (Washington, DC: Born Free USA, 2022), accessed July 18, 2025, <https://www.bornfreeusa.org/campaigns/animals-in-captivity/elephant-report/>

33) Bob Jacobs, Heather Rally, Catherine Doyle, Lester O'Brien, Mackenzie Tennison, and Lori Marino, "Putative Neural Consequences of Captivity for Elephants and Cetaceans," *Reviews in the Neurosciences* 33, no. 4 (2021): 439-465, <https://doi.org/10.1515/revneuro-2021-0100>.

34) "What There Is to Know," *Keep Whales Wild*, accessed July 18, 2025, <https://keepwhaleswild.com/en/what-there-is-to-know/>.

35) Stephen H. Ridgway, "Reported Causes of Death of Captive Killer Whales (*Orcinus orca*)," *Journal of Wildlife Diseases* 15, no. 1 (1979): 99-104, <https://doi.org/10.7589/0090-3558-15.1.99>.

다. 감금사육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된 사건들

상기한 이유들로 인해 고래, 유인원, 코끼리류 동물은 감금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아래 사건들은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 코끼리 타이크(Tyke) 사건

- 순회서커스단 소속으로 세계 각지에서 서커스 공연에 동원되었던 타이크는 1994년 8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공연 중 관리사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고 조련사를 사망하게 한 뒤 탈출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80여 발의 총알을 맞고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
- 이 사건은 서커스에서의 동물 학대와 감금 문제를 조명하며, 이후 2012년 네덜란드, 2018년 미국 뉴저지주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물 서커스 금지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³⁶⁾



[그림 8] 도심을 배회 중인 코끼리 타이크 (출처: 위키피디아)

2) 범고래 케이코(Keiko) 사건

- 케이코는 1995년 영화 <프리윌리>에 캐스팅돼 유명해지며 그가 살던 멕시코 수족관의 열악한 실태가 알려졌다.
- 이후 세계적인 야생 방사 운동이 일어나 멕시코 수족관은 1998년 9월 9일 케이코를 고향인 아이슬란드 바다에 방사, 케이코는 포획 범고래 중 야생 방사된 최초의 케이스가 되었다. 하지만 수족관 생활이 길었던 케이코는 끝내 야생 무리에 합류하지 못한 채 2003년 폐렴으로 사망하였다.³⁷⁾

36) "Tyke (Elephant)," *Wikipedia*, last modified July 17, 2025, [https://en.wikipedia.org/wiki/Tyke_\(elephant\)#cite_note-PetaFactsheet-4](https://en.wikipedia.org/wiki/Tyke_(elephant)#cite_note-PetaFactsheet-4).

37) 남종영, "야생에서 무려 5년, 가족만 만났더라면....," *한겨레*, 2019년 10월 19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1810.html>



[그림 9] 인간과 범고래의 우정을 주제로 한 영화 ‘프리 윌리’ 속 한 장면 (출처: 왓차)

3) 범고래 킬리쿰(Tilikum) 사건

- 세계 최대 돌고래 전시공연 업체인 미국 시월드(SeaWorld)에서 인공수정의 정자 공급 및 공연에 이용되던 킬리쿰은 2010년 공연 중 조련사 돈 브랜쇼를 공격해 사망하게 하였다.
- 2013년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피쉬(Blackfish)』의 선댄스영화제 상영과 함께 킬리쿰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이후 돌고래 전시공연 산업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시월드는 범고래 번식 중단 및 점진적 전시공연 폐지를 선언하였다.³⁸⁾



[그림 10] 2009년 시월드에서 공연 중인 범고래 킬리쿰 (출처: 위키피디아)

38) 남종영, “세계를 바꾼 살인고래 ‘킬리쿰’ 사망,” 한겨레, 2019년 10월 19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77770.html

4) 고릴라 하람베(Harambe) 사건

- 하람베는 2016년 5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동물원(Cincinnati Zoo and Botanical Garden)에서 고릴라 전시 구역의 방벽을 넘어 해자로 떨어진 아이를 잡아 끌고 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동물원 측은 이를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하람베를 즉시 사살하였다.
- 이후 현장 관람객이 촬영한 영상 및 사건 경위가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람베는 아이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살은 과도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감정과 의도가 있는 존재로서의 유인원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며 전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림 11] 해자로 떨어진 아이를 잡고 있는 고릴라 하람베 (출처: 위키피디아)

4. 국내 법령 및 지침 검토

국내에서는 열악한 시설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침팬지 등 동물의 탈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³⁹⁾ 그때마다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에도 문제의 시설이 별다른 행정 조치나 시설 개선 없이 계속해서 운영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가. 시설

- WAZA(세계 동물원·수족관 협회), EAZA(유럽 동물원·수족관 협회)등의 국제 기관은 유인원 등 사회적인 고등 인지 동물의 단독 사육을 금지하고 행동 생태에 맞는

39) 이성덕, “대구 달성공원 사육장 탈출 침팬지 죽자 동물단체 “열악한 시설 탓”,” 뉴스1, 2023년 8월 14일,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139968>.

상세한 사육시설 기준 및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의 면적 항목이 관련 규정의 전부이다.** 현행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벨루가 등은 이 면적 규정 적용 대상에서조차 제외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의 면적 기준 또한 특정 종의 행동 생태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예컨대 하루 평균 이동 거리가 30km가량인 코끼리의 경우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35㎡, 야외 방사장은 125㎡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영국 동물원 인허가법(Zoo Licensing Act 1981)⁴⁰⁾은 코끼리의 단독사육 및 콘크리트 바닥 사육을 금지하며, 1마리당 야외 방사장 최소 규모를 1헥타르(10,000㎡)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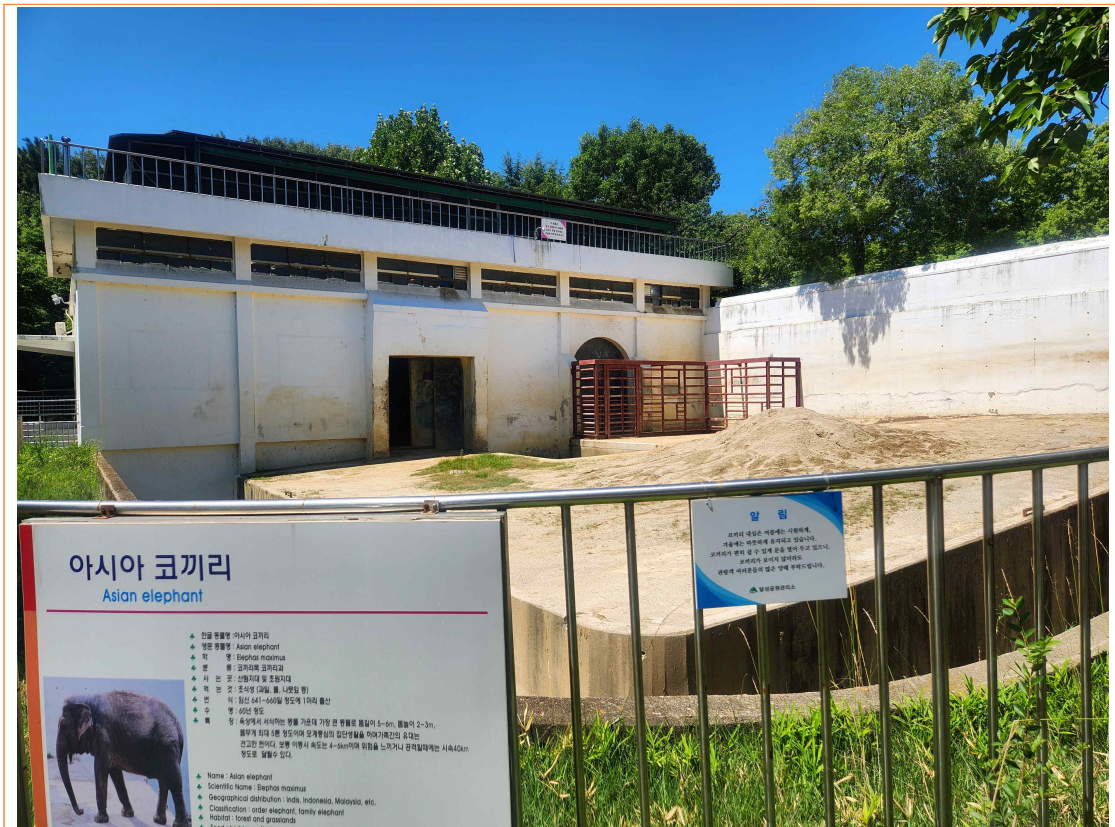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비율	시설 및 장비
코끼리목	아시아코끼리	- 넓이 35㎡ - 높이 3m - 야외 방사장 넓이 125㎡	70% (야외 방사장 35%)	-

[표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 중 코끼리목 부분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5.1.24.>)

- 290㎡ 규모⁴¹⁾의 대구 달성공원 코끼리 야외방사장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매우 협소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위 면적 기준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0)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for Great Britain* (London: DEFRA, 2025), Appendix A8: "Elephant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1494272de62f4a103a828d/standards-of-zoo-practice-2025.pdf>

41) 조수현, 김지원, 목은수, "사람이 관람하기 위한 구조... 공원 부속시설로만 인식 '한계'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1-2)]", *경인일보*, 2024년 10월 17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1721>.



[그림 12] 대구 달성공원의 코끼리 사육장

	달성공원 동물원	서울대공원	서울어린이대 공원	우치공원 동물원	전주동물원
면적(㎡)	262.5	4,842	750	346	4,460
마리 수	1	3	2	2	2
마리당 면적(㎡)	131.25	1,614	375	173	2,230

[표 4] 국내 동물원 코끼리 야외방사장 크기
(출처: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1721>)

나. 동물 관리

- 환경부가 2021년에 발간한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종별 인지 능력, 정서적 복잡성을 반영한 개체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지정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겨우 형식적으로 구비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설이 많다.

분류군	포유강-장비목-코끼리과			
대상동물	아시아코끼리, 아프리카코끼리			
최소 공간기준 (㎡/높이/증가비)	암컷 1두	39㎡		100%
	암컷 2두	74㎡		
	수컷 1두	56㎡		
	암컷 1 + 새끼 1	56㎡		
방사장 (넓이/높이/비고)	1마리 기준	167㎡		50% (넓이)
야외 방사장	필수			
실내 사육시설	필수			
먹이 횟수	1일 1회 이상			
먹이 종류	건초, 과채류, 미네랄 등			
음수	항상 신선한 물(1일2회 이상 교체, 상시급수 권장) 수영장			
바닥재	내실	건초, 우드칩, 톱밥 등	방사장	초지, 모래, 흙, 진흙 등
실내 사육시설 요건	※수컷은 개체별 내실 필요 ※공간의 구분을 위해서는 콘크리트로 충분히 고정된 바닥에 80cm 이상의 철재 기둥을 활용하여 구분 ※번식을 위한 출산 공간 필요 ※온도가 가용한 시기에는 내실과 외실을 자유롭게 이동 가능			
필요 연출	※모든 개체가 눈·바·직사광선을 회피할 수 있는 그늘 공간 ※발바닥의 손상을 막기 위해 내실 콘크리트 바닥은 매끈해야 함 ※동절기 내실 바닥은 찬기를 막을 수 있는 바닥재는 매트 필요 ※긍정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구조물 (신체 각 부위를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 필요, 체중측정 장비)			
방사장	※야외 방사장은 모래와 흙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진흙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미스트, 사육사에 의한 물 뿌려주기, 수공간 제공 ※몸을 비비고 문지를 수 있는 고정된 통나무, 바위, 스크랩물품 비치 필요 ※깊이 1m, 너비 3m 이상의 건식해저드(선택)			
환기	자연환기, 강제환기(내실 6~8시간마다 공기 교체)			
최저온도	13℃ (출산 및 포유시 21℃)			
이중문 유/무	유(입·방사 시 숙련된 사육사들의 신호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개폐)			
위해요소	※성체의 코를 이용해서 닫는 거리는 지상부터 6m이며, 파손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기자제는 보호처리 ※독성식물 식재 주의 ※관람객에게 직접 손이 닿지 않는 이격거리 유지 ※나무구조물을 방부목으로 제작하지 않음			
참고자료	※Elephant Husbandry Resource Guide (American Zoo and Aquarium Association Elephant Taxon Group, International Elephant Foundation)			

[표 5] 환경부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의 코끼리 사육 기준

분류군	포유강-영장목-성성이과							
대상동물	침팬지, 오랑우탄, 수마트라 오랑우탄							
최소 공간기준(㎡/높이/증가비)	개체수: 1	32㎡		3m		25%		
ZAA 기준(㎡/높이/증가비)	개체수: 1~2	22.3㎡		2.4m		25%		
스위스 기준(㎡/높이/증가량)	개체수: 3	방사장	35㎡	방사장	4m	방사장	8㎡	
		내실	35㎡	내실	4m	내실	8㎡	
야생생물법 기준(㎡/높이/증가비)	1마리 기준	31.5㎡		3m		42%		
야외 방사장	필수 (위터헤저드 폭: 6m, 최저 수심: 2.8m 권장)							
실내 사육시설	필수							
먹이 횟수	1일 1회 이상							
먹이 종류	과채류, 곤충류, 전용사료, 미네랄, 단백질 사료 등							
음수	항상 신선한 물							
바닥재	내실	우드칩, 톱밥 등		방사장		초지, 모래, 흙, 우드칩 등		
은신처	※동시에 모든 개체가 몸을 가릴 수 있는 은신처 필요 ※번식을 위한 격리된 출산 공간 필요 ※개별 혹은 쌍을 격리가 가능한 공간							
필요 연출	※모든 개체가 눈·비·직사광선을 회피할 수 있는 그늘 공간 ※자연 채광을 위해 방사장을 운영시 자율방사 시행 ※오르내릴 수 있는 복잡한 구조물 ※육체적, 정신적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풍부화 물품 (공, 로프, 그네, 먹이를 숨길 수 있는 풍부화, 다양한 촉감의 소품, 상자, 거울, 물어뜯을 수 있는 소품, 노즈워크 아이템)							
환기	자연환기, 강제환기(내실 6~8시간마다 공기 교체)							
이중문 유/무	유(입·방사 시 숙련된 사육사들의 신호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개폐)							
위해요소	※접촉이 가능한 피복철망, 전선, 플러그 독성식물 식재 주의 ※관람객에게 직접 손이 닿지 않는 이격 거리 유지 ※나무 구조물을 방부목으로 제작하지 않음 ※출입문의 고리는 항상 자물쇠로 고정 동물이 철망이나 틈 사이로 사육사를 위해하면 안됨							

[표 6] 환경부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의 침팬지, 오랑우탄, 수마트라오랑우탄 사육 기준

- 한편 영국 동물원 인허가법(Zoo Licensing Act 1981)⁴²⁾의 대형유인원 관리 기준은, 자연 상태의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사회적 불안정(예: 공격성, 분리, 고립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한 문서화된 검토(documented review)를 실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action plan)를 수립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유럽동물원·수족관협회(EAZA) 기준은 다음과 같이 종별 인지 능력, 정서적 복잡성을 반영한 사육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동물원·수족관협회(EAZA) 『코끼리 사육 모범 지침서(EAZA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Elephants)』 (2020)

- 모든 동물 사육과 관리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고, 동물의 고유한 가치와 복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든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오락이나 상업적 목적이 복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교육 활동은 코끼리를 도구적 소비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요구가 있는 개체로 존중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 강령에 기반한 구체적인 사육관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넓은 실외 공간: 가능한 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코끼리가 걷고, 뛰고, 진흙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지형과 구조물: 언덕, 물웅덩이, 모래 언덕, 그늘, 나무 구조물 등을 포함하여 자연 서식지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 건강한 생체 리듬 유지: 조명, 활동 시간, 계절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이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사회적 그룹 유지: 모계 중심의 무리 형성을 고려해 여러 개체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며, 단독 수용은 피해야 한다.
- 적극적 풍부화: 장기적 기억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사료 탐색, 물리적 탐색, 놀이,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장비와 설계가 필요하다. 풍부화는 단순한 장난감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코끼리의 자연행동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구조적 전략이어야 한다. 모든 풍부화 요소는 개체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선택권 제공: 코끼리가 다양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지형, 접근 가능한 공간, 그룹 선택 등을 포함한다.

42)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for Great Britain* (London: DEFRA, 2025), A9: "Great Ape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1494272de62f4a103a828d/standards-of-zoo-practice-2025.pdf>

『EAZA 서부 로랜드 고릴라 사육 모범 지침서(EAZA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he Western Lowland Gorilla)』 (2024)

○ 사육 시설

- 바닥: 자연 재질 바닥(예: 흙, 모래, 낙엽, 나무껍질)을 사용해 동지 짓기와 보행 시 관절 부담을 줄여야 한다. 콘크리트 바닥은 부분적 보조재로만 허용되며, 위에 깔개를 제공해야 한다. 바닥은 흡수성과 배수성, 소음 완화 기능이 필요하다.
- 구조물: 나무통, 줄, 사다리, 플랫폼, 은신처 등 다양한 구조물은 입체적 이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 면적: 고릴라 한 마리당 실외 최소 100m², 실내 최소 20m²를 권장한다. 암컷 중심 가족군, 수컷 단독, 수컷 그룹 등 사회구조에 따라 공간 구조를 맞춤 설계해야 한다. 실외 공간은 탐색, 채집, 휴식 구역을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 사회 구조

- 한 마리 수컷 + 여러 암컷 구조가 기본이나, 비번식 수컷 그룹(bachelor group)도 운영 가능하다. 비번식 수컷 그룹은 유대 강화 훈련과 성향 분석을 통해 조성해야 하며, 우두머리 수컷 부재 시 갈등 위험이 있다.
- 고립, 반복 행동, 과도한 공격성은 사회의 부조화에서 기인하므로, 충분한 활동 자극과 복합적 사회 구조 유지는 이상행동 예방에 필수적이다.

○ 환경 풍부화: 풍부화는 고릴라의 행동적 요구 충족, 스트레스 감소, 자연 행동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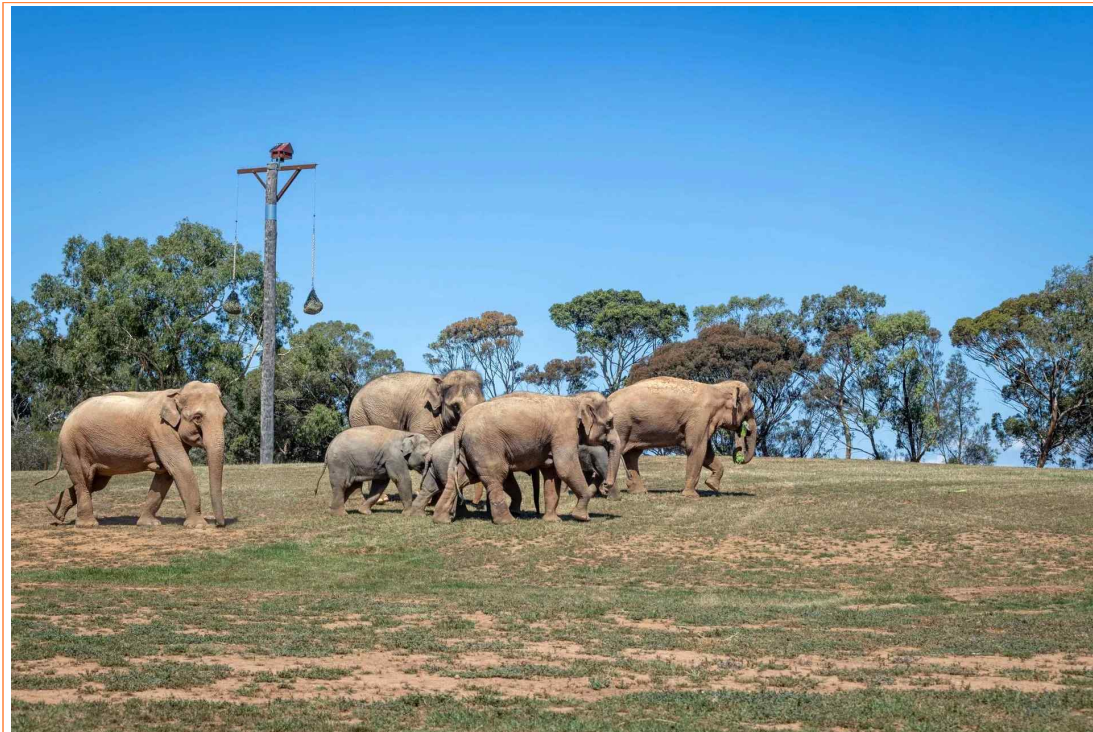
- 먹이 풍부화(Feeding Enrichment): 채집 시간 연장을 위해 은닉 먹이, 다양한 위치에 분산 급여, 도구 사용 등이 필요하다. 자작나무, 버드나무, 포플러 등 신선한 가지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이는 잎, 껍질, 수액 섭취 외에도 동지 재료로 사용됨). 투척, 매달기, 파묻기 등 먹이 제시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비먹이 풍부화(Non-feeding Enrichment): 장난감, 거울, 천, 로프, 물체 조작을 통한 탐색 행동 유도가 필요하다. 청각, 후각, 촉각 자극을 위해 향기 도포, 재질 변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계절 및 날씨에 따라 물놀이, 햇볕 쬘기, 바람 맞기 등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 인지 자극: 퍼즐 피더, 도구 조작 과제 등 문제 해결을 통한 보상 제공이 필요하다. 개체별 선호 행동 분석 후, 맞춤형 과제 설계가 중요하다.

『EAZA 침팬지 사육 모범 지침서(EAZA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Chimpanzees)』 (2022)

- 전체 설계 원칙: 침팬지는 반수상(半樹上)성 영장류로서, 입체적 공간구조(3차원)가 필수적이다. 햇빛이 드는 공간과 그늘진 공간이 교차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침팬지가 자발적으로 햇빛과 그늘을 오가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해야 한다. 실내 공간이 좁을 경우 실외 공간의 복잡성을 보완해야 하며, 반대로 실외 환경이 단순할 경우 실내를 보완해야 한다.
- 사회 구조: 침팬지는 본래 다수의 수컷과 암컷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회구조를 갖고 있으며, 분열-재결합(fission-fusion) 형태로 구성원들이 유동적으로 소집단을 형성한다. 사육 상황에서 수컷이 1마리만 존재하는 구조는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복수 수컷이 포함된 집단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복수 수컷 집단은 서열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충분한 공간과 복잡한 환경 제공 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침팬지를 장기간 단독으로 사육하는 것은 금지되며, 시각·청각·촉각 접촉이 가능한 구조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연령대가 포함된 구조가 바람직하며, 젊은 개체는 학습을 위해, 나이든 개체는 사회기능 유지와 지도 역할을 위해 중요하다. 비번식 수컷 집단도 형성될 수 있으며, 동년배 수컷이나 익숙한 개체끼리 구성해야 한다. 암컷과의 시각·후각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의 공격성 감소가 가능하다.
- 환경 풍부화: 풍부화는 침팬지가 종 특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복지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에 핵심적이다. 한 예로 인지 기반 풍부화(퍼즐, 도구 사용), 감각 기반 풍부화(다양한 냄새, 소리, 촉감 자극) 등이 있다.
 - 조작 풍부화: 플라스틱·나무 장난감, 천, 잡지, 상자, 병 등을 활용 가능하나, 공공 관람 구역에서는 인간화 이미지 방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손으로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은 비정상 행동 감소 및 놀이 행동 증가에 효과적이다.
 - 먹이 관련 풍부화: 침팬지는 야생에서 하루 중 80%가량을 먹이를 찾고 가공하는 데 사용하므로, 사육 하에서도 이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 은닉 먹이, 건초 더미 안 먹이 숨기기, 나뭇가지 활용 등은 채집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 식물 풍부화: 침팬지는 야생에서 잎, 꽃, 껍질, 씨앗을 먹으며 동지를 짓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 자작나무, 포플러 등을 사육장에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3] 네덜란드 아펜헐(Apenheul Primate Park) (출처: Zoochat)



[그림 14] 호주 웨리비 오픈레인지주(Werribee Open Range Zoo)의 엘리펀트 트레일
(출처: pelago)



[그림 15] 스위스 취리히동물원의 캥크라찬 코끼리공원(Kaeng Krachan Elephant Park)
(출처: zoo.ch)



[그림 16] 싱가포르 주(Singapore Zoo)의 오랑우탄 전시시설 (출처: The Straits Times)

5. 감금사육의 중단 방안 검토

- 비인간인격체가 감금 사육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동물원 업계에서 감금사육의 보완책으로 제시하는 환경풍부화(enrichment) 방안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Law & Kitchener, 2017; Lyn et al., 2020). Swaisgood & Shepherdson(2005)에 따르면 동물원의 환경풍부화가 정형 행동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데 성공한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정형행동은 감금 환경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으며(Jacobs et al., 2021) 동물원의 풍부화는 자연 서식지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자극 환경에 비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Morgan & Tromborg, 2007).⁴³⁾
- 동물원이 관람객의 동물보호 인식을 제고한다는 일각의 견해 역시 타당하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원에서 습득한 동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새로운 보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Adelman et al., 2010; Miller et al., 2013).⁴⁴⁾
- 비인간인격체가 감금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종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사육 및 전시를 금지하는 사례가 다음과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 전시 규제

1) 고래류 전시 규제 관련 입법례

- 다큐멘터리 『더 코브(The cove)』 (2009)와 『블랙피쉬(Blackfish)』 (2013) 개봉 이후 비판적 여론이 거세어진 것을 계기로 돌고래 전시 금지 논의가 본격화되며 전 세계적인 규제 흐름이 시작되었다. 입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⁴⁵⁾⁴⁶⁾

43) Catherine Doyle, Heather Rally, Lester O'Brien, Mackenzie Tennison, Lori Marino, and Bob Jacobs, "Continuing Challenges of Elephant Captivity: The Captive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Welfare Implications," *PeerJ* 12 (2024): e18161, <https://doi.org/10.7717/peerj.18161>.

44) Andrea M. Godinez and Eduardo J. Fernandez, "What Is the Zoo Experience? How Zoos Impact a Visitor's Behaviors, Perceptions, and Conservation Efforts," *Frontiers in Psychology* 10 (2019): Article 1746, <https://doi.org/10.3389/fpsyg.2019.01746>.

45) Naomi A. Rose, A. Scott Soller, and Elizabeth Claire Matthews Parsons, *The Case Against Marine Mammal Captivity*, 6th ed. (Washington, DC: Animal Welfare Institute and World Animal Protection, 2023), 186.

46) 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 (WDC), "How Many Whales and Dolphins Are in Captivity?", *Whales.org*, accessed July 17, 2025, <https://us.whales.org/how-many-whales-dolphins-in-captivity/>.

오락을 위한 고래류 전시를 전면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국가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헝가리, 인도, 카자흐스탄, 니카라과, 슬로베니아, 스위스, 멕시코
살아있는 고래류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	아르헨티나(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브라질(수입 및 수출 금지), 칠레(전시를 위한 돌고래 수입 및 수출 금지), 코스타리카(수입 및 수출 금지), 키프로스(수입 금지), 도미니카 공화국(범고래 수입 금지), 헝가리(수입 금지), 인도(수입 금지), 말레이시아(거래 금지), 멕시코(거래 금지), 솔로몬 제도(수출 금지), 스위스(수입 금지), 미국(수입 엄격히 규제)
고래류를 사육하는 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	브라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영국(한때 돌고래 수족관 30개를 보유하였다가 현재는 모두 폐지한 상태), 이탈리아('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기' 등 인간과 돌고래의 상호작용 금지)

[표 7] 세계 고래류 사육 금지 현황

- 국내의 경우 2023년 12월부터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고래목을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 규정하고 보유를 금지하기 시작했으나, 기존 고래목 개체 보유 기관에서 번식을 통해 새끼가 태어날 경우 '신규 보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⁴⁷⁾ 법 개정 이후로도,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개체들의 사육환경 개선 혹은 생추어리 등으로의 이송 방안은 여전히 잔존하는 숙제이다.

47) 동물자유연대, “[성명]거제씨월드 고래 불법 증식 처벌하고, 신규 개체 몰수 방안 마련하라!,” 동물자유연대, 2024년 9월 4일, <https://www.animals.or.kr/campaign/zoo/68227>.



[그림 17] 거제씨월드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벨루가



[그림 18] 2024년 8월 거제씨월드의 고래류 번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동물자유연대

- 또한 2016년 동물원 수족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본래 제정안은 동물원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안 제7조 제2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나 동물원 업계의 반발로 이와 같은 내용은 제외된 채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으로 제정되었다.⁴⁸⁾
- 더욱이 동물쇼를 위한 훈련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동물 학대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현행법상 동물쇼 도중이나 훈련 과정에서 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정의하는 명시적 학대 행위를 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동물보호법 제10조가 대개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는 경우로만 학대 행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



[그림 19] 생태설명회를 가장한 쇼에 동원되고 있는 돌고래들

2) 대형 유인원 전시 규제 관련 입법례

- 인도는 다음과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유인원의 전시 및 사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야생생물보호법(Wild Life Protection Act), 1972』 제38H조 (동물원의 인가): 모든 동물원은 중앙동물원관리국(Central Zoo Authority)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여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해진 기준, 규범 및 기타 사항"에 따라 판단된다. 이 조항에 따라, 인도 정부는 다음을 조치할 수 있다: 동물원이 인도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가 불허, 특정 종의 전시나 사육 제한 (예: 대형 유인원)

48) 조경애, 「동물쇼의 법적 규제에 관한 소고」, 동물법연구 제1권 제1호 (2020.2): 17쪽.

- 중앙동물원관리국(Central Zoo Authority)의 대형 유인원 사육 금지 방침: "대형 유인원(Great Apes) –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 은 인도의 어떤 동물원에서도 사육될 수 없으며, 신규 도입은 일체 허가되지 않는다."⁴⁹⁾

3) 코끼리 전시 규제 관련 입법례

- 캐나다 정부가 발의한 S-15법안(Bill S-15,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and the 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provincial Trade Act)⁵⁰⁾⁵¹⁾은 작년 12월 상원 통과 후 현재 하원 심의 중이며, 통과 시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코끼리 포로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된다.
- 과학 연구 또는 보존 프로그램 등 제한적 예외를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코끼리 및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을 사육하거나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연방 정부가 발급한 허가에 의하지 않는 한 살아있는 코끼리나 유인원의 캐나다 반입 및 반출을 금지한다. 위반 시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과 야생 동물 및 식물 보호와 국제 및 주간 무역 규제법(WAPPRITA)을 개정하여 이를 실현한다.
- 법안이 규제 대상으로 코끼리와 유인원만 포함하는 이유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과학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동물들을 사육하는 것은 잔혹하다고 할 수 있다. 코끼리와 유인원은 수명이 길고 인지 능력이 뛰어나며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으로, 사육 시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신체 건강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인 복지 지표를 보인다. 고래류, 코끼리, 유인원을 제외한 다른 야생동물 종을 사육하는 것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잔인함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캐나다의 앞서 고래류의 포획 및 사육 금지 법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⁵²⁾).

49) Central Zoo Authority, *Zoos in India 2014: Legislation, Policy, Guidelines and Strategy* (New Delhi: Central Zoo Authority, 2014)

50)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Appearance before the Senate Committee - April 10, 2024*, Government of Canada, accessed July 17, 2025,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corporate/transparency/briefing-materials/appearance-before-senate-committee-april-10-2024.html>.

51)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Government of Canada Introduces Bill to Protect Elephants and Great Apes in Captivity," *Government of Canada News Release*, November 20, 2023, accessed July 17, 2025,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news/2023/11/government-of-canada-introduces-bill-to-protect-elephants-and-great-apes-in-captivit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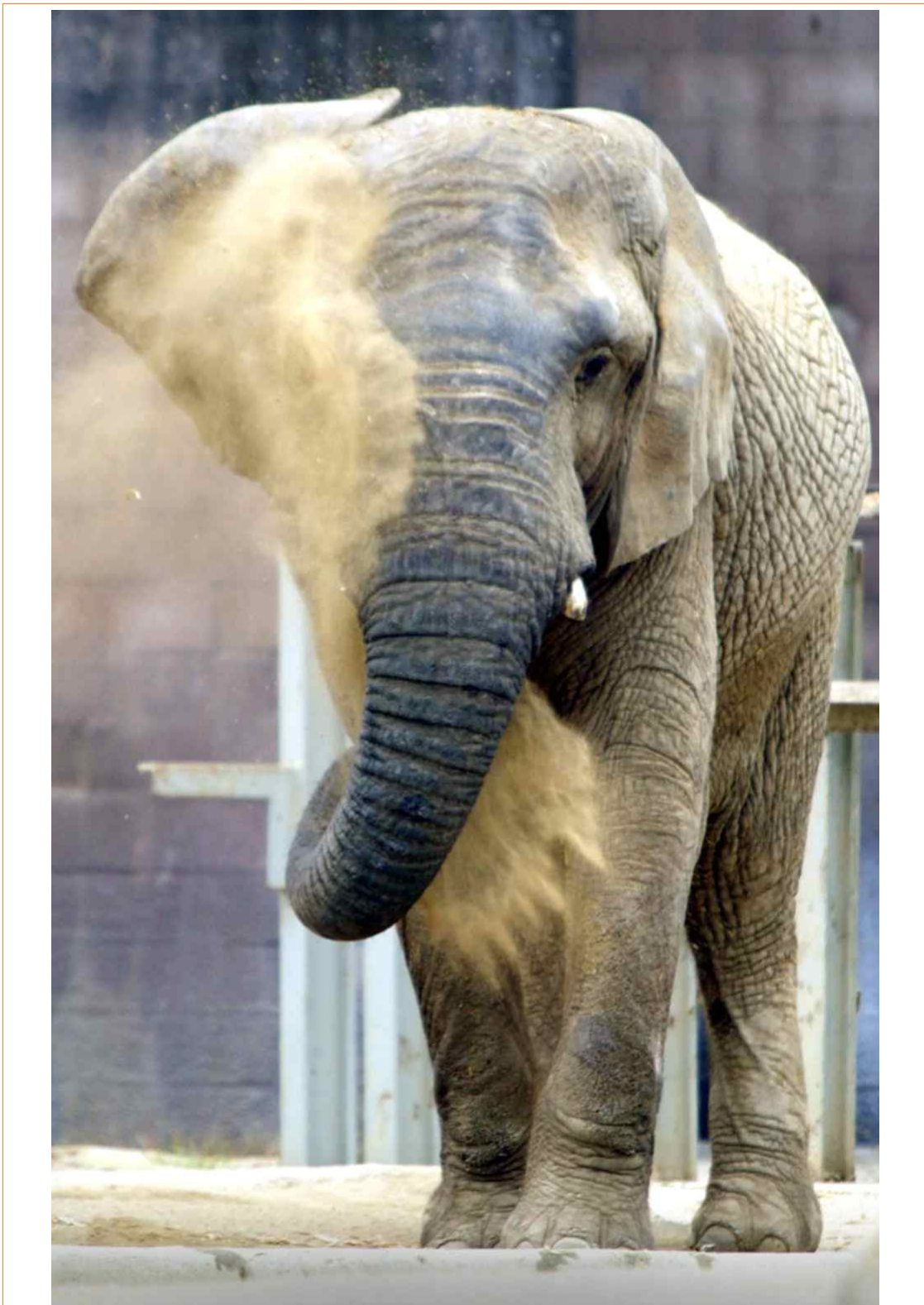
52) Canada.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and other Acts (Ending the Captivity of Whales and Dolphins)*, S.C. 2019, c. 11.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Accessed July 17, 2025.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9_11/page-1.html.

- 법적 금지 조치와 무관하게, 도시형 동물원에서 자발적으로 코끼리 전시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추세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물원, 디트로이트 동물원, 필라델피아 동물원, 시애틀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 영국 에든버러 동물원, 런던동물원, 아르헨티나 멘도자동물원 등이 코끼리 전시를 중단하고 남아있는 코끼리를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였다.

관절염, 욕창, 이상행동...동물원 코끼리의 현실

론 레이건 미국 디트로이트 동물원 원장은 2004년 44살 코끼리 완다와 50살 윙키의 은퇴를 발표했다. 그는 사육사, 동물원 큐레이터 등 동물원에서 35년 동안 일한 동물원 전문가다. 동물원은 버려지거나 압수된 외래종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구역으로 사용해야하며, 동물복지 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등 끊임없이 동물원 내 동물복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완다와 윙키를 위해 최고의 사육사를 고용하고, 우리의 환경을 개선했다. 그러나 하루 60km 이상 여행하는 코끼리에게 축구장 보다 작고 먼지가 날리는 우리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며 몇 걸음 가더니 이내 방향을 바꿔서 주변을 서성였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관절염으로 매일 항생제와 진통제를 먹었다. 이런 질환은 야생 코끼리에게는 없고, 오직 동물원 코끼리에게만 나타난다. 그는 코끼리에게 동물원은 매 순간이 고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결국 론 레이건 원장은 완다와 윙키를 위해 결단을 내린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코끼리의 습성에 맞게 여러 친구가 있는 넓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4만평(13만 2231㎡) 규모의 '아크2000'로 그들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동물원에 갇혀 지내던 야생동물의 보호구역으로 무엇보다도 겨울에도 따뜻하다. 연구자들은 코끼리를 '비인간 인격체'라고 부른다. 동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죽음까지 애도하는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친절한 눈인사를 잊지 않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굉장히 지적인 존재가 바로 코끼리다.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던 론 레이건 원장은 81년 동안 유지했던 디트로이트 동물원 코끼리 전시관을 완전히 폐쇄했다. **"진정 코끼리를 위한 일은 그들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금 더 일찍 그들을 보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림 20] 김란영, “관절염, 욕창, 이상행동...동물원 코끼리의 현실,” *제주소리*, 2018년 12월 3일



[그림 21]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의 마지막 코끼리 루루. 루루는 2005년 3월 동물원을 떠나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Performing Animal Welfare Society(PAWS) 생추어리로 이송되었다. (출처: NBC News)

나. 보호구역(Sanctuary) 모델

- 사육 및 전시를 중단한 시설이나 국가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안으로, 장기간의 사육 생활로 야생성을 잃은 동물들을 사망 시까지 보호하기 위한 자연적 혹은 반(半)자연적인 사육 공간을 뜻한다. 번식이나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없는 비영리 시설로써 동물 자체의 복지를 위해 설계되는 보호소이며, 방문하는 대중의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진정한 생츠퍼리는 단순한 수용 시설이 아니라 회복과 존엄의 공간이며 과거 학대받은 개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공간이기도 하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물을 '소유'하지 않고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한다.⁵³⁾

- 플로리다에 있는 AZA(동물원수족관협회) 공인 White Oak Conservation Foundation의 코끼리 보호구역은 면적이 68.8km²에 달하며 숲, 초원, 연못, 습지, 다양한 식물(식량) 종을 갖추고 있다. 테네시주의 Elephant Sanctuary는 12.4km²에 걸쳐 있으며 호수, 목초지, 산림, 자연 사료 등을 갖추고 있다.
-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라이베리아의 세컨드 찬스 침팬지 보호구역에서 61마리의 침팬지를 보호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침팬지는 과거 라이베리아의 한 연구실에서 수십 년 동안 실험에 동원되다가 구조되었으며, 현재 야생과 유사한 환경의 6개 하구 섬에서 소규모로 그룹을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
- 일본 내 유일한 영장류 전문 생츠퍼리인 구마모토 생츠퍼리(Kumamoto Sanctuary, KS)에는 과거 실험실에서 사용되었던 침팬지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츠퍼리 내에서 다양한 인지적 풍부화 프로그램(cognitive enrichment programs)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보소(Bossou) 스타일'로 알려진 터치스크린 과제로, 참여는 강제되지 않는다. 일부 침팬지는 과제에 강한 흥미를 보이며 자발적 참여하는 등 개체 간 반응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과제를 통한 인지적 능력 향상, 자신감 고양,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다.⁵⁴⁾
- 고래 보호구역 프로젝트(WSP)는 100에이커 이상의 수역에 이르는 노바스코샤주 포트 힐포드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동물 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육시설에서 구출된 첫 번째 범고래가 2025년에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다.⁵⁵⁾

53) Lauren M. Robinson and Alexander Weiss, eds., *Nonhuman Primate Welfare: From History, Science, and Ethics to Practice* (Cham: Springer Nature, 2023), <https://doi.org/10.1007/978-3-030-82708-3>.

54) Lauren M. Robinson and Alexander Weiss, eds., *Nonhuman Primate Welfare: From History, Science, and Ethics to Practice* (Cham: Springer Nature, 2023), <https://doi.org/10.1007/978-3-030-82708-3>.

55) Whale Sanctuary Project. *Home*. Accessed July 17, 2025. <https://whalesanctuaryproject.org/>.

-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전시장이 아닌 '교육·보전 허브'로의 전략적 전환을 목표로, 보유 돌고래들을 이송하기 위한 북미 최초의 보호구역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 지난 1월 5일 폐쇄된 프랑스의 돌고래 수족관 앙티브 마린랜드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남은 고래들을 보호구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고래목 보유를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남아있는 개체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방안으로 해외 생추어리로의 이전 혹은 국내 생추어리 조성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림 22] 앙티브 마린랜드 잔류 돌고래들의 이송 방안을 검토한 프랑스 정부 보고서 (출처: The Whale Sanctuary Project)



[그림 23] 구마모토 생추어리 (출처: 구마모토 생추어리 홈페이지)



[그림 24] White Oak Conservation Foundation의 코끼리 보호구역 (출처: White Oak Conservation Foundation)

다.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

1) 개념

- 포로로 잡힌 사람을 법원에 데려와 구금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로, 18-19세기 노예 제도에 대항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법적 수단이다. 일례로 영국의 대법원이 *Somerset v. Steuart*(1772)에 대한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여 그를 해방한 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⁵⁶⁾

2) 비인간 동물에 적용한 사례

- 아래와 같은 역사적 판결들을 통해 동물 또한 '법인격체'로서 억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56) "*Somerset v Stewart*," Wikipedia, last modified July 15, 2024, https://en.wikipedia.org/wiki/Somerset_v_Stewart.

가) 수이사 사건

- 2005년 9월 28일, 변호사이자 법학 교수인 헤론 호세 데 산타나와 루시아노 로차 산타나가 침팬지 수이사(Suíça)를 동물원에서 보호구역으로 돌려보내달라며 제기한 인신보호영장 소송에서 브라질 법원은 수이사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청원서는 수이사가 2005년 5월 동료 침팬지 헤론이 암으로 사망한 후 우울증 증상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으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독방에 갇혀 사육되며 이동권을 제한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수이사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사망했으나 이 판결은 비인간 종이 소송에서 법적 주체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로 의미를 가진다.

나) 세실리아 사건

- 2016년 AFADA(아라곤 입양 가족 협회) 회장인 파블로 부옴파드레가 제출한 인신 보호청원에 따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법원은 콘크리트 철창에 갇힌 침팬지 세실리아를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하고 브라질의 보호구역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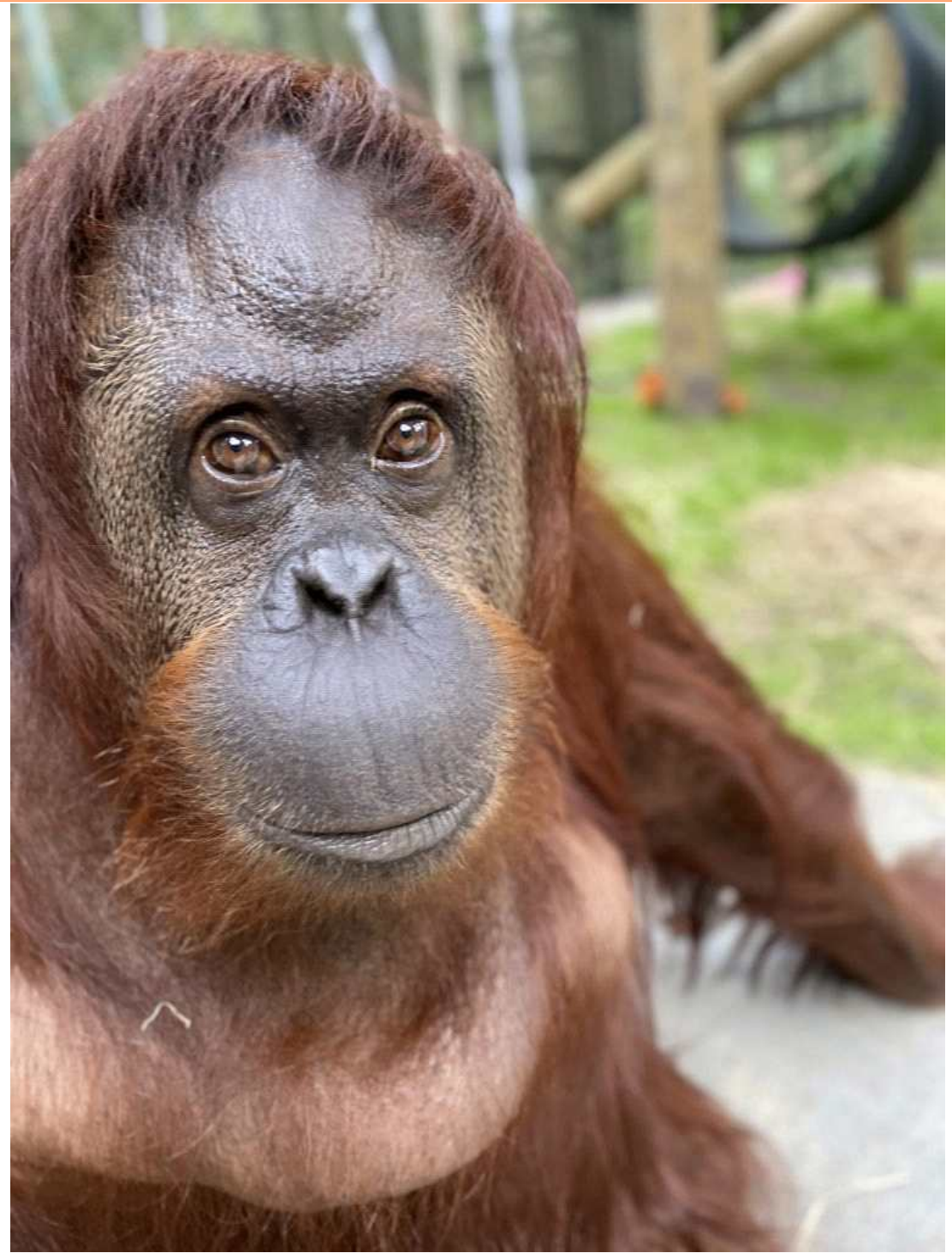
다) 산드라 사건

- 아르헨티나 동물권을 위한 변호사연합(AFADA)은 불법포획된 오랑우탄 '산드라'를 대신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을 상대로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하였고, 2019년 법원은 산드라를 법적 권리가 있는 '비인간인격체'로 인정하여 자연보호구역으로 옮기라는 판결을 내렸다.

라) 에스트렐리타 사건

- 거미원숭이 에스트렐리타는 불법 포획되어 에콰도르 가정에서 18년간 반려동물로 살아가다가 당국에 압수되었다. 2019년 동물원 격리 후 에스트렐리타가 사망하자 보호자였던 여성은 국가를 상대로 인신보호청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2년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1조 '자연의 권리' 조항을 근거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 RoN)와 동물권(Animal Rights)을 하나로 통합한 역사적 판결로 평가된다. 이는 자연의 권리 내부에 동물의 권리를 포함시켜, 양 운동 간 이론적·실천적 통합의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⁷⁾
- 판결은 다음을 명시였다: 1)동물은 헌법상 권리 주체이며 2)감정적 존재, 종 특유의 행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므로 3)인간이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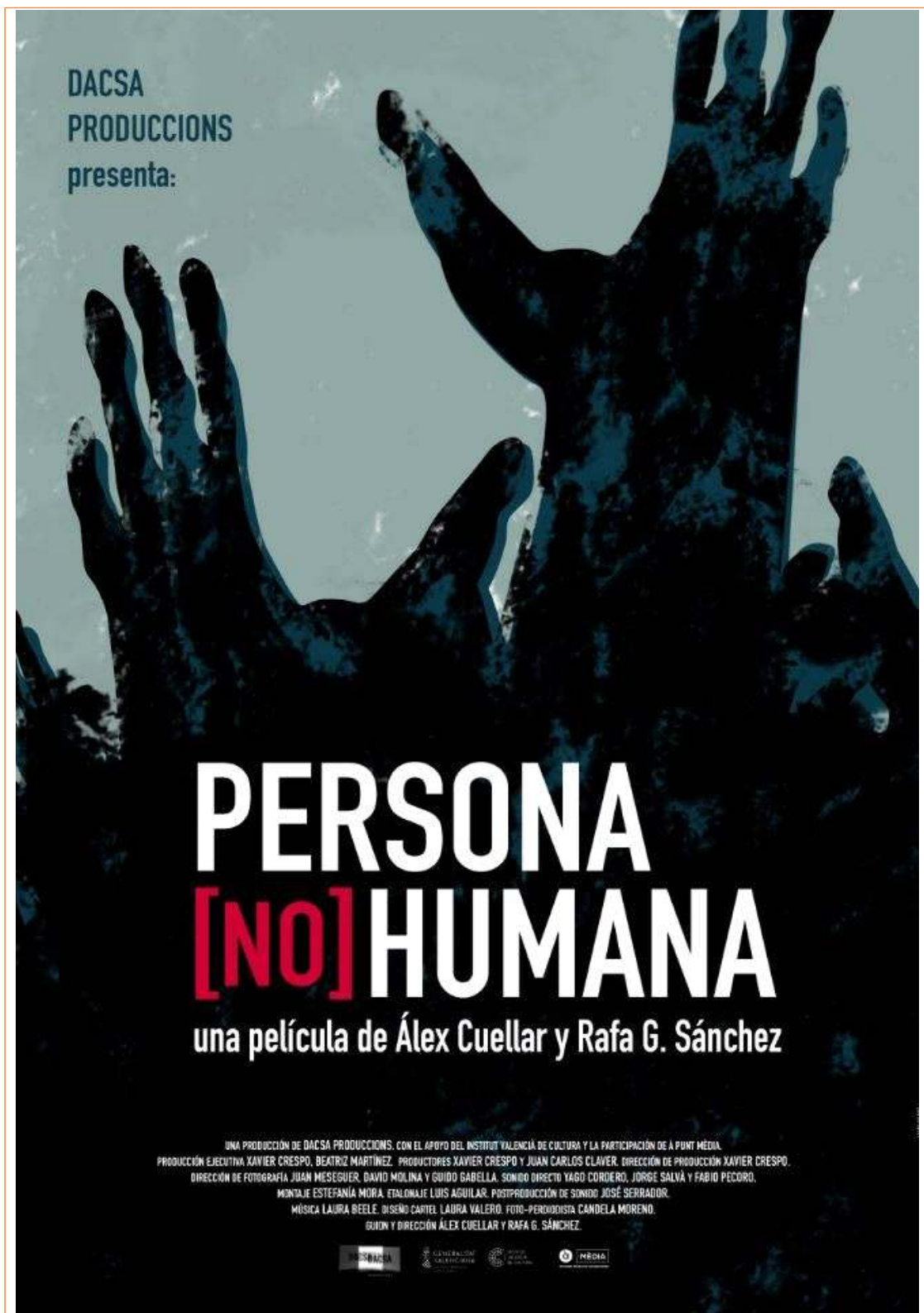
57) Macarena Montes Franceschini and Kristen Stilt, "Naturalized Rights of Animals, Animalized Rights of Nature," SSRN Electronic Journal, May 13, 2024, <https://doi.org/10.2139/ssrn.4826699>.



[그림 25] 오랑우탄 산드라 (출처: Center for Great A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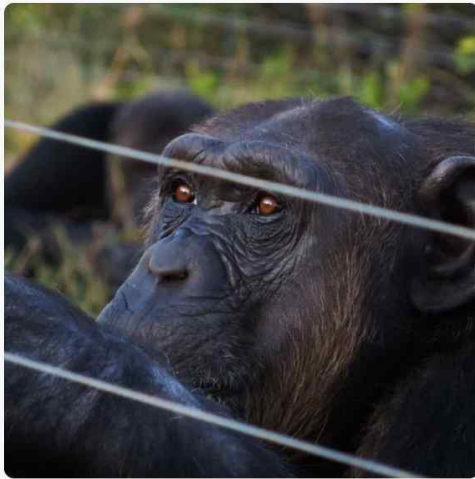
[그림 26] 거미원숭이 에스트렐리타 (출처: Harvard's ReVista)



[그림 27] 산드라와 세실리아에게 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NGO 단체, 변호사들의 여정을 그린 스페인 다큐멘터리 영화 ‘비인간인격체(Persona [No]Humana)’

라. 법인격 부여

더 나아가, 비인간인격체를 사육 및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동물의 법인격 개념이 최근 수십 년 동안 크게 발전하였다.⁵⁸⁾ 감금사육은 도구적 이용과 지배의 패러다임을 반복 재생산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생명권과 자유권이라는 윤리적·법적 논거 위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여건상 이러한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울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변화 흐름과 선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는 필요하다.



means that, for lawyers to help them in court, they have to make the case for how a human has been harmed by the nonhuman animal's treatment or situation. If that sounds strange or unfair given all we know about nonhuman animals, that's because it is, and many court cases that seek justice for nonhuman animals have been lost because of it.

That's where we come in. Nonhuman animals need and are entitled to rights—actual legal rights, rather than symbolic declarations—and no being should be denied rights simply because of who they are. Simply put, the law has to catch up to what we know about nonhuman animals, and courts and legislatures have to begin figuring out which species are entitled to which rights on what basis. Until this happens, the law will remain chained to the past, nonhuman animals will continue to suffer under poorly enforced, insufficient, easily reversed animal welfare laws, and we humans are going to continue to destroy nonhuman lives and the planet we share with other beings.

Imagine a world where respect for freedom and dignity runs so deep we don't hesitate to extend it to nonhuman animals. That's the world we're working to help build.

“비인간 동물은 권리를 필요로 하며, 그 권리란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어떤 존재도 단지 그들이 그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중략)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은 과거에 얽매어 있을 것이고, 비인간 동물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불충분하며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동물복지법 때문에 계속 고통 받을 것이다.”

[그림 28] 비인간동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출처: NhRP 홈페이지)

1) 개념

- 법인이란 누가 또는 무엇이 어떤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정하기 위해 입법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범주이다. 즉 법인에 피해가 발생하면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일부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기업, 국가, 강, 신상(idol) 등 비인간 대상에게도 법적 인격이 부여된 사례가 존재한다.

58) David Favre, “Should Nonhuman Animals Be Recognized Legally as Persons?,” *AMA Journal of Ethics* 26, no. 9 (September 2024): E696–700, <https://doi.org/10.1001/amajethics.2024.696>.

-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 영장류 동물학자 제인 구달(Jane Goodall), 동물행동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등을 포함한 34명의 저자는 1993년에 ‘대형유인원 프로젝트’(the Great Ape Project)를 공동 발간하면서, 대형유인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적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6월 영장류 동물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윤리학자 등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이름(The Great Ape Project)의 국제조직을 설립하여 국제연합(UN)으로 하여금 대형유인원에게 생명권 및 개별적 자유를 보장하고 고문을 금지할 것 등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⁵⁹⁾
- 토머스 화이트와 로리 마리노(Lori Marino) 박사를 포함한 과학자, 철학자, 동물행동학자들로 구성된 헬싱키 그룹(Helsinki Group)은 2010년 고래와 돌고래 권리선언문(Declaration of Rights for Cetaceans: Whales and Dolphins)을 통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고래류에게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 생명권: 모든 고래류는 생명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자유권: 고래류는 자연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포획이나 감금은 금지되어야 한다.
- 소유 금지: 고래류는 개인, 단체, 국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 환경 보호권: 고래류의 자연환경은 보호되어야 하며, 서식지 파괴나 오염은 방지되어야 한다.
- 문화 보호권: 고래류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전통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미국의 NhRP(The Nonhuman Rights Project)도 감금사육되고 있는 유인원, 코끼리, 돌고래, 고래의 법인격과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시·공연 금지, 동물실험 금지 등을 목표로, 감금된 비인간동물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활동을 해왔다.

2) 주요 사례

- 스페인의 자치령인 발레아레스 제도 의회는 2007년 2월 세계 최초로 대형유인원에게 고문, 학대 그리고 불필요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다.⁶⁰⁾ 이후 2008년 6월 스페인 의회의 환경·농업·어업위원회도 대형유인원에게 생명권과 개별적 자유권, 그리고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해로운 연구 관행과 상업적 이익을 위한 착취로부터 대형유인원을 보호하는 결의를 하였다.⁶¹⁾⁶²⁾

59) 유선봉, 「뉴질랜드 동물복지법과 대형유인원 프로젝트: 대형유인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법학논문집 35, no. 1 (2011): 219-250.

60) Steve Clarke, “Shall Ape Be Allowed to Kill Ape?” *Practical Ethics* (blog), February 26, 2010, <https://blog.practicaethics.ox.ac.uk/2010/02/shall-ape-be-allowed-to-kill-ape/>.

61) “The Rights of Apes – and Humans,” *The Malta Independent*, July 19, 2008,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하이(Ojai)시는 조례 940호를 제정하여, 오하이 시 법전 제5편 제4장에 「제10조 - 코끼리의 신체적 자유권」을 신설할 것을 명시하였다⁶³⁾. 조례는 2023년 9월 26일 오하이 시의회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 차원에서 비인간 동물의 법적 권리(Personhood), 특히 신체적 자유를 명문화한 사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하이 시 법전 「제5편 위생 및 건강」, 「제4장 동물」에 「제10조 - 코끼리의 신체적 자유권」을 추가하는 캘리포니아주 오하이 시 시의회의 조례

오하이 시 시의회는 도덕의 진보, 과학적 발견, 인간의 경험에 의거하여 코끼리의 기본적인 신체적 자유권을 인정한다.

시의회는 코끼리의 기본적인 신체적 자유권을 성문화하는 조례를 채택하여, 코끼리의 자율성과 본능적 행동을 침해하는 포획 환경에서의 사육을 금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오하이 시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 서문

상기 서문과 사실들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이 문서에 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조. 법전 개정

오하이 시 법전 제5편 제4장에 「제10조 - 코끼리의 신체적 자유권」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10조 - 코끼리의 신체적 자유권

제5-4.1001항.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특정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a) "신체적 자유(bodily liberty)"란 개인에 의한 강제적 감금, 외부 통제 또는 선택권의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구속이나 강요,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 (b) "지정 종(species)"이란 코끼리과(Elephantidae)에 속하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 (c) "개인(person)"이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신탁, 공공기관 등 캘리포니아 법이 인정하는 모든 법적 형태의 주체를 포함한다.

<https://www.independent.com.mt/articles/2008-07-19/newspaper-opinions/The-Rights-of-apes-%E2%80%93-and-humans-210614>.

62) 유선봉, 「뉴질랜드 동물복지법과 대형유인원 프로젝트: 대형유인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법학논문집 35, no. 1 (2011): 219-250.

63) Ojai City Council, *Ordinance No. 940: Elephant Right to Bodily Liberty Ordinance*, October 2023, <https://www.nonhumanrights.org/wp-content/uploads/2023/10/Ordinance-No.-940-Ojai-Elephant-Right-to-Body-Liberty-Ordinance.pdf>.

제5-4.1002항. 권리

- (a) 오하이 시 내의 모든 지정 종 개체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b) 어떠한 개인도 지정 종이 신체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4.1003항. 예외

오하이 시 내에서 지정 종을 감금하는 개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위 조항(5-4.1002)을 위반하지 않는다: (1) 세계동물보호연맹(Global Federation of Animal Sanctuaries) 인증을 받은 보호소에서 감금하는 경우 또는 (2) 지정된 종이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번식을 시도하거나 번식하지 않으며,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보호소에서 감금하는 경우. 이 규정은 동일 법전 제5편 제4장 제7조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5-4.1004항. 집행

- (a) 평화유지관, 규제 집행관, 시 매니저가 지정한 자는 본 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시 매니저는 법령 공포 절차에 따라 서면 규정을 공포하고, 집행에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b) 본 조례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개인은 유죄로 간주되며, 오하이 법전 제1편 제2장 제1-2.03항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 (c) 위반은 행정적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된다.
- (d) 이 조례에 명시된 구제책은 누적적으로 적용되며, 오하이 시는 법률 또는 형평법상 허용되는 모든 구제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 (e) 시 법무관은 금지명령, 법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 조치를 통해 본 장을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환경 결정

오하이 시 시의회는 다음의 사실들이 시의회의 독립적 판단을 반영한다고 확정한다. 이 조례는 아래 사유에 의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으로부터 면제된다:

- a. 본 조례는 각 코끼리를 개별적인 천연 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CEQA 가이드라인 15307조로부터 면제된다.
- b. 본 조례는 코끼리를 자연환경의 핵심 구성요소로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CEQA 가이드라인 15308조로부터 면제된다.
- c. 본 조례는 환경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CEQA 가이드라인 15061(b)(3)로부터 면제된다.

제6조. 분리 가능성 조항

이 조례의 어떤 조항, 문장, 단어가 법원에서 무효 또는 위헌으로 판결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의회는 각각의 조항이 독립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한다.

제7조. 발효일

이 조례는 채택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법 제36937조에 따라)

제8조. 인증

시 서기관은 본 조례의 채택 사실을 인증하고, 법에 따라 공표 또는 게시한다.

[표 8] 오하이시 조례 제940호

6. 결론 및 정책 제안

가. 결론

- 본 보고서는 고등한 인지능력과 자의식을 지닌 이들 동물, 즉 비인간인격체로 간주될 수 있는 동물종에 대한 감금사육이 단순한 동물복지의 차원을 넘어선 윤리적 문제임을 밝히고, 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특히 '비인간인격체'라는 개념의 철학적 정당성과 과학적 근거, 그리고 국제적 논의 및 입법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자의식, 도덕 감수성, 사회적 유대, 복잡한 감정 체계 등을 갖춘 종들—유인원, 코끼리, 고래류—은 인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심리·인지 특성을 보이며, 이들에 대한 감금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동물 보호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간과 유사한 뇌 구조와 정서·사회적 능력을 지닌 동물들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평생을 비좁은 공간에 감금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질병을 겪고 있는 현실은,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현행 동물보호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 특히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열악한 사육 시설 및 사육 기준으로 인해 많은 고등 인지 동물들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고래류의 경우 그나마 2023년 12월부터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되기 시작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개체들의 사육환경 개선 혹은 생추어리 등으로의 이송 방안은 여전히 잔존하는 숙제이다.
- 향후 단지 감금사육을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동물의 법적 지위 검토, 생추어리 시스템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다층적·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또한 이와 같은 법·제도적 변화가 '비인간인격체'로 간주되는 특정 고등 인지 동물에게 국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보다 다양한 동물종을 법적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 정책 제안

끝으로, 한국 사회가 실현가능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비인간인격체의 대우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 비인간인격체의 감정·사회성·고통 경험에 대한 대중 교육과 홍보 강화
- 수족관·동물원의 감금 전시 중심 운영 방식에서 생명 존중 교육 중심으로의 전환 유도 필요
- 동물권·동물복지 전문가, 법조인, 정책 입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 구축 및 비인간동물의 법적 보호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2) 궁극적으로 감금 사육 금지 원칙의 법제화 필요

- 비인간인격체의 전시·공연·실험 목적 감금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제·개정 필요
- 해외 판례 및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고등 인지 동물에 대한 제한적 권리 부여 및 법적 주체성 인정 방안 검토
- 국회, 정부, 법조계,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 검토 기구 구성 및 논의

3) 현재 사육 중인 개체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 현재 국내에 감금된 비인간인격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생츄어리 이송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국내 보호시설 확충 또는 해외 생츄어리와의 협력 체계 구축

[참고문헌]

○ 서적 및 보고서

-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Steven M. Wise. Rattling the Cage: Toward Legal Rights for Animals. New York: Perseus Books, 2000.
- Born Free USA. Elephants in Zoos: A Legacy of Shame. Washington, DC: Born Free USA, 2022.
- Eurogroup for Animals. Wild Animals in EU Circuses: Problems, Risks and Solutions. Brussels: Eurogroup for Animals, March 2021.
- Europ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a (EAZA). EAZA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Elephants. Amsterdam: EAZA Executive Office, 2020.
- Naomi A. Rose, A. Scott Soller, and Elizabeth Claire Matthews Parsons. The Case Against Marine Mammal Captivity. 6th ed. Washington, DC: Animal Welfare Institute and World Animal Protection, 2023.
- Central Zoo Authority. Zoos in India 2014: Legislation, Policy, Guidelines and Strategy. New Delhi: Central Zoo Authority, 2014.
- Lauren M. Robinson and Alexander Weiss, eds. Nonhuman Primate Welfare: From History, Science, and Ethics to Practice. Cham: Springer Nature, 2023.

○ 학술지 논문

- Kovacs, Rebecca. 2017. Acknowledging Non-Human Persons: Reconstituting Our Conception of Personhood. MA thesis, Ryerson University.
- Morrison, R., and D. Reiss. "Precocious development of self-awareness in dolphins." PLoS ONE 13, no. 1 (2018): e018981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89813>.
- Andrea M. Godinez and Eduardo J. Fernandez. "What Is the Zoo Experience? How Zoos Impact a Visitor's Behaviors, Perceptions, and Conservation Efforts." Frontiers in Psychology 10 (2019): Article 1746.
<https://doi.org/10.3389/fpsyg.2019.01746>.
- Bossley, Mike, et al. "Tail Walking in a Bottlenose Dolphin Community: The Rise and Fall of an Arbitrary Cultural 'Fad'." Biology Letters 14, no. 9 (2018): 20180314. <https://doi.org/10.1098/rsbl.2018.0314>.
- Castellano, Rafael Cervera. "Will the Great Primates Be Recognized as Non-Human Persons in the 21st Century?" Stoa 15, no. 29 (2024): 45–59.
<https://doi.org/10.25009/st.2024.29.2768>.

- Coulter, Kendra. "A Critical Assessment of Bill S-203, Ending the Captivity of Whales and Dolphins Act." *Canadian Journal of Comparative and Contemporary Law* 8 (2022): 17.
- Doyle, Catherine, et al. "Continuing Challenges of Elephant Captivity: The Captive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Welfare Implications." *PeerJ* 12 (2024): e18161. <https://doi.org/10.7717/peerj.18161>.
- Favre, David. "Should Nonhuman Animals Be Recognized Legally as Persons?" *AMA Journal of Ethics* 26, no. 9 (2024): E696–700. <https://doi.org/10.1001/amajethics.2024.696>.
- Ferrer-i-Cancho, Ramon, and Brenda McCowan. "The Span of Correlations in Dolphin Whistle Sequences." *Journal of Statistical Mechanics: Theory and Experiment* 2012, no. 06 (2012): P06002. <https://doi.org/10.1088/1742-5468/2012/06/P06002>.
- Gallup, Gordon G. Jr. "Chimpanzees: Self-Recognition." *Science* 167, no. 3914 (1970): 86–87. <https://doi.org/10.1126/science.167.3914.86>.
- Jacobs, Bob, et al. "Putative Neural Consequences of Captivity for Elephants and Cetaceans." *Reviews in the Neurosciences* 33, no. 4 (2021): 439–465. <https://doi.org/10.1515/revneuro-2021-0100>.
- Marino, Lori, et al. "Cetaceans Have Complex Brains for Complex Cognition." *PLoS Biology* 5, no. 5 (2007): e139. <https://doi.org/10.1371/journal.pbio.0050139>.
- Montes Franceschini, Macarena, and Kristen Stilt. "Naturalized Rights of Animals, Animalized Rights of Nature." *SSRN Electronic Journal*, May 13, 2024. <https://doi.org/10.2139/ssrn.4826699>.
- Ridgway, Stephen H. "Reported Causes of Death of Captive Killer Whales (*Orcinus orca*)." *Journal of Wildlife Diseases* 15, no. 1 (1979): 99–104. <https://doi.org/10.7589/0090-3558-15.1.99>.
- Thew, Michelle, et al. "The Ban on the Use of Chimpanzees in Biomedical Research and Testing in the UK Should Be Made Permanent and Legally Binding." *Alternatives to Laboratory Animals* 40, no. 1 (2012): 3–8. <https://doi.org/10.1177/026119291204000102>.
- Whitehead, Hal, and Luke Rendell. "Culture in Whales and Dolphin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4, no. 2 (2001): 309–324. <https://doi.org/10.1017/S0140525X0100396X>.
- Frans de Waal, "Putting the Altruism Back into Altruism: The Evolution of Empath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2008): 279–300.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9.103006.093625>.
- Frans B.M. de Waal and Malini Suchak, "Prosocial Primates: Selfish and Unselfish Motiva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65,

no. 1553 (2010): 2711-2722. <https://doi.org/10.1098/rstb.2010.0119>.

- Judy Che-Castaldo, et al. "Comparative Survival Analyses among Captive Chimpanzees (*Pan troglodytes*) in America and Japan." *PeerJ* 9 (2021): e11913. <https://doi.org/10.7717/peerj.11913>.
- 유선봉. 「뉴질랜드 동물복지법과 대형유인원 프로젝트: 대형유인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법학논문집 35, no. 1 (2011): 219-250.
- 조경애. 「동물쇼의 법적 규제에 관한 소고」. 동물법연구 1, no. 1 (2020.2): 17쪽.

○ 정부 문서 및 관련 법령

- Canada.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and other Acts (Ending the Captivity of Whales and Dolphins), S.C. 2019, c. 11.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9_11/page-1.html.
- Central Zoo Authority. Zoos in India 2014. New Delhi: CZA, 2014.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Government of Canada Introduces Bill to Protect Elephants and Great Apes in Captivity." News Release, November 20, 2023.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news/2023/11/government-of-canada-introduces-bill-to-protect-elephants-and-great-apes-in-captivity.html>.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Appearance before the Senate Committee – April 10, 2024. Government of Canada. Accessed July 17, 2025.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corporate/transparency/briefing-materials/appearance-before-senate-committee-april-10-2024.html>.
- Ojai City Council. Ordinance No. 940: Elephant Right to Bodily Liberty Ordinance. October 2023. <https://www.nonhumanrights.org/wp-content/uploads/2023/10/Ordinance-No.-940-Ojai-Elephant-Right-to-Body-Liberty-Ordinance.pdf>.
- Cruz, Edmundo Lúcio da. "Sentença do Habeas Corpus impetrado em favor da chimpanzé Suíça." *Revista Brasileira de Direito Animal* 1, no. 2 (2006): 281-285. <https://periodicos.ufba.br/index.php/RBDA/article/view/10259/7315>.
- Tercer Juzgado de Garantías, Mendoza. "Sentencia de Habeas Corpus de la chimpancé 'Cecilia', sujeto no humano." 3 de noviembre de 2016. PDF. Tercer Juzgado de Garantías, Mendoza. <https://www.nonhumanrights.org/wp-content/uploads/2016/12/Sentencia-de-Habeas-Corpus-de-Cecilia.pdf>.
- Cámara Nacional de Apelaciones en lo Criminal y Correccional – Sala VI. "Orangutana, Sandra – Habeas Corpus (2)," Juzgado de Instrucción No. 47, Buenos Aires, November 14, 2014. PDF. Poder Judicial de la Nación. [https://www.animallaw.info/sites/default/files/Orangutana%2C%20Sandra%20s%](https://www.animallaw.info/sites/default/files/Orangutana%2C%20Sandra%20s%20)

3A%20Habeas%20Corpus.pdf.

- Constitutional Court of Ecuador (Plenary). Final Judgment No. 253-20-JH/22 (Rights of Nature and Animals as Subjects of Rights: "Estrellita Monkey" case). January 27, 2022. PDF. Constitutional Court of Ecuador.
<https://www.animallaw.info/sites/default/files/Final-Judgment-Estrellita-w-Translation-Certification.pdf>.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for Great Britain. London: DEFRA, 2025.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1494272de62f4a103a828d/standards-of-zoo-practice-2025.pdf>

○ 웹사이트 및 비영리단체 자료

-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Worldwide Circus Bans." Accessed July 17, 2025.
http://www.ad-international.org/animals_in_entertainment/go.php?id=281&ssi=10.
- Eco Jurisprudence Monitor. "Indi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Policy Prohibiting Dolphinariums."
<https://ecojurisprudence.org/initiatives/policy-on-establishment-of-dolphinarium/>.
- Keep Whales Wild. "What There Is to Know." Accessed July 18, 2025.
<https://keepwhaleswild.com/en/what-there-is-to-know/>.
- 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 (WDC). "How Many Whales and Dolphins Are in Captivity?" Accessed July 17, 2025.
<https://us.whales.org/how-many-whales-dolphins-in-captivity/>.
- Whale Sanctuary Project. "Home." Accessed July 17, 2025.
<https://whalesanctuaryproject.org/>.
- 동물자유연대. "[성명] 거제씨월드 고래 불법 증식 처벌하고, 신규 개체 몰수 방안 마련하라!" 동물자유연대, 2024년 9월 4일.
<https://www.animals.or.kr/campaign/zoo/68227>.

○ 언론기사 및 기타

- 김민재. 『'노후·열악' 54년 전 지은 동물원...340마리 생활 (대구)』. SK브로드밴드 뉴스, 2024년 5월 13일.
<https://news.sk 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782>.
- 김지숙. 『열흘 된 새끼 돌고래까지... 거제씨월드서 또 고래가 죽었다』. 한겨레, 2024년 9월 11일.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157976.html.
- 남종영. 『야생에서 무려 5년, 가족만 만났더라면...』. 한겨레, 2019년 10월 19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1810.html>.
- ——. 『세계를 바꾼 살인고래 '틸리쿰' 사망』. 한겨레, 2019년 10월 19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77770.html.

- 남형도. 『사랑받던 침팬지 '관순이'...뒷방도 모자라, '학대논란' 사파리로』. 머니투데이, 2022년 5월 8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814061980683>.
- 이성덕. 『대구 달성공원 사육장 탈출 침팬지 죽자 동물단체 "열악한 시설 탓"』. 뉴스1, 2023년 8월 14일.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139968>.
- 이종행, 오승지. 『우치동물원 '동물 관리' 문제 없나』. 광주매일신문, 2021년 5월 19일.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21422631546261005>.
- 임의진. 『[우치 동물원과 놀이동산 패밀리랜드] 코끼리떼와 어울려 '아아아~' 타잔이 뛰노는 놀이동산』. 광주일보, 2022년 10월 27일.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66879200744955336>.
- 전현진. 『우리가 푸바오에 열광하는 동안 죽어간 복동이와 루디...'이상행동' 동물 실태』. 경향신문, 2024년 4월 4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31634001>.
- 정재혁. 『푸바오 사랑과 춤추는 코끼리』. 경향신문, 2024년 4월 3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31815001>.
- 조수현, 김지원, 목은수. 『사람이 관람하기 위한 구조... 공원 부속시설로만 인식 '한계'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1-2)]』. 경인일보, 2024년 10월 17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1721>.
- "The Rights of Apes – and Humans." The Malta Independent, July 19, 2008. <https://www.independent.com.mt/articles/2008-07-19/newspaper-opinions/The-Rights-of-apes-%E2%80%93-and-humans-210614>.
- "Tyke (Elephant)." Wikipedia. Last modified July 17, 2025. [https://en.wikipedia.org/wiki/Tyke_\(elephant\)#cite_note-PetaFactsheet-4](https://en.wikipedia.org/wiki/Tyke_(elephant)#cite_note-PetaFactsheet-4).
- "Somerset v Stewart." Wikipedia. Last modified July 15, 2024. https://en.wikipedia.org/wiki/Somerset_v_Stewart.
- Steve Clarke. "Shall Ape Be Allowed to Kill Ape?" Practical Ethics (blog), February 26, 2010. <https://blog.practicaethics.ox.ac.uk/2010/02/shall-ape-be-allowed-to-kill-ape/>.
- "Chimpanzees' Tea Party." Wikipedia. Last modified July 29, 2023. https://en.wikipedia.org/wiki/Chimpanzees%27_tea_party.

[부 록]

가. 영국 동물원 인허가법(Zoo Licensing Act 1981)에 따른 코끼리 관리 기준⁶⁴⁾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장기 관리 계획 (Long-Term Management Plan, LTMP)

A8.1

모든 코끼리를 보유한 기관은 코끼리 개체군에 대한 문서화된 장기 관리 계획(LTMP) 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최소 5년마다, 또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드시 검토 및 갱신되어야 한다. LTMP는 향후 최소 30년의 관리 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a) 개체군의 목적(예: 번식 무리, 수컷 무리, 비번식 개체의 은퇴 시설 등)
- b) 관리 체계의 변경 계획
- c) 번식 관리 계획(해당되는 경우)
 - (i) 자연 번식을 계획하는 경우, 허가보유자(Licence Holder)는 안정적인 다세대 무리 내에서 번식이 이루어질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 무리에는 성체 수컷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 내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화해야 한다.
 - (ii) 인공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윤리 검토(ethical review)를 거쳐야 한다.
 - (iii)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리(예: 수컷 무리)의 경우, 그 사유와 관리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 d) 번식으로 인한 자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 확보 계획
- e) 무리의 사회적 구조 및 개체 간의 사회적 적합성 평가를 포함하고,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예: 다른 기관으로의 이송 등)를 명시해야 한다.
- f) 동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계획
- g) 장기적인 우리(Enclosure) 개발 계획
- h) 채택된 관리 체계의 구체적 내용
- i) 코끼리 훈련 프로그램
- j) 사육사 및 관리인 교육 프로그램
- k) 코끼리 관리와 관련된 조직 내 관리 구조
- l) 기관이 코끼리 사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의 퇴출 전략(exit strategy)

64)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for Great Britain* (London: DEFRA, 2025), Appendix A8: "Elephant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1494272de62f4a103a828d/standards-of-zoo-practice-2025.pdf>

개체별 복지 계획 (Individual Welfare Plan, IWP)

A8.2

모든 코끼리는 개별적으로 복지 계획(IWP) 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최소 매년, 또는 중대한 사건 발생 이후 반드시 검토 및 갱신되어야 한다. IWP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각 개체의 병력, 건강상태, 행동 관찰, 사육기록
- b) 사회적 적합성 평가 및 무리 내 관계에 관한 분석
- c) 코끼리 복지그룹(EWG)에서 개발한 복지 평가 도구를 활용한 정기적 평가 결과
- d) 복지 평가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및 일정

사육 환경 (The Captive Environment)

사회적 집단 구성 (Social Grouping)

A8.3

코끼리는 사회적으로 호환 가능한 집단 내에서 사육되어야 하며, 의학적 또는 관리상의 필수 사유를 제외하고 고립된 상태로 사육해서는 안 된다.

A8.4

코끼리 집단은 가능한 한 다세대 사회 구조를 이루어야 하며, 이는 성체 암컷, 수컷, 청소년, 새끼가 포함된 구조를 포함한다. 단일 세대나 성별로만 구성된 집단은 사회적 행동의 기회가 제한되므로 그에 따른 행동적·복지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A8.5

집단 내 불안정성(예: 공격적 상호작용, 분리 등)이 관찰되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기록된 검토(documented review)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개체의 이동 또는 다른 기관과의 교환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 및 공간 (Enclosures)

A8.6

코끼리 우리(전시·생활 공간)는 코끼리의 생리적·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야외 방사장(outdoor area)은 코끼리 1마리당 최소 1헥타르(ha)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공간은 다양한 지형적 요소(예: 구릉, 평지, 수면 등)를 포함하여 이동·탐색·사교·운동 등 종 특유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b) 실내 구역(indoor area)은 코끼리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서로 시각적·촉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개체를 개별 격리 칸막이(stall)에 장기간 수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c) 지면은 자연적 토양 또는 모래 등 충분히 완충되는(submissive) 비슬립(non-slip) 재질이어야 하며,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은 주된 생활공간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d) 그늘, 바람막이, 온열·냉각 시설을 포함하여 계절적 환경 변화(예: 혹한, 폭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e) 야외 구역에는 목욕, 진흙 목욕, 먼지 목욕 등이 가능하도록 자연 수조, 모래 구역, 진흙 웅덩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f) 구조물, 통로, 문, 울타리 등은 코끼리의 체중, 힘, 행동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하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탈출이 불가능해야 한다.

A8.7

코끼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간의 이동 경로는 충분한 폭과 안전한 바닥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문이나 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람과 코끼리가 동일한 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protective contact barriers) 를 설치해야 한다.

A8.8

방사장에는 풍부화 요소(environmental enrichment) 가 일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나무, 흙무더기, 수조, 모래 구역, 먹이 숨김 장치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코끼리가 자연적인 탐색·채집·사회적 놀이 행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A8.9

풍부화 계획은 문서화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여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급여 및 영양 (Feeding and Nutrition)

A8.10

코끼리의 식단은 자연 상태에서의 섭식 패턴을 반영해야 하며,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도한 영양공급은 비만과 건강 악화를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

A8.11

코끼리는 하루 대부분을 먹이 탐색에 소비하므로, 급여는 단순한 공급행위가 아닌 행동적 풍부화(enrichment) 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한다.

먹이를 방사장 곳곳에 흩어 놓는 산포 급여(scatter feeding)

높이에 변화를 둔 매달린 건초망 또는 플랫폼 급여

먹이 숨김 장치를 활용한 탐색형 급여(feeding puzzles)

A8.12

코끼리는 지속적인 섭식이 가능해야 하며, 식사 간 장시간의 금식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24시간 중 다수의 급여 시점을 설정해야 한다.

A8.13

코끼리의 체형은 표준화된 신체상태지수(Body Condition Scoring, BCS) 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영양 불균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료 구성을 조정해야 한다.

행동 관리 (Behavioural Management)

A8.14

모든 코끼리는 정기적으로 코끼리 행동복지평가도구(Elephant Behavioural Welfare Assessment Tool, EWG) 를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 평가는 개체의 행동·사회적 상호작용·환경 이용 정도 등을 포괄해야 하며, 기록은 보존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A8.15

평가 결과에서 비정상적·문제적 행동(예: 정형행동, 공격성, 무기력 등)이 확인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 계획(correction plan) 을 수립해야 한다.

A8.16

코끼리에게는 자발적인 선택의 자유(choice and control) 가 주어져야 하며, 이동, 사회적 접촉, 휴식, 활동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 관리 (Healthcare)

A8.17

코끼리 개체군은 예방 중심의 수의학적 관리 체계(preventive veterinary programme)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정기적 건강검진 및 발 관리(foot care)
- b) 기생충 방제 및 예방접종 프로그램
- c) 치아·피부·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 관리
- d) 고령 개체의 노령 관리 계획(geriatric care plan)
- e) 생식기 질환 및 번식 관리

A8.18

모든 의료행위는 코끼리 진료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수의사는 코끼리 복지 평가 결과와 행동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A8.19

모든 진료·검사·치료 기록은 개체별 의료기록으로 체계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LTMP 및 IWP 검토 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한다.

신체적 구속의 사용 (Use of Physical Restraint)

A8.20

자유 접촉 방식(free contact system) 은, 코끼리와 관리자가 물리적 장벽 없이 동일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A8.21

표준 관리 체계는 보호 접촉 방식(protected contact) 이어야 하며, 이는 사람과 코끼리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두되, 코끼리가 스스로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A8.22

기계적 구속장치(예: 이동식 또는 고정식 크러시, crush)는 오직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때, 훈련된 인력이 감독하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사용 사례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그 사용의 필요성과 절차가 명확히 정당화되어야 한다.

공공 안전 (Public Safety)

A8.44

울타리와 게이트에는 코끼리가 오르거나 발을 디딜 수 있는 수평 구조물(가로대나 케이블)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소 높이는 암컷의 경우 1.9미터, 수컷의 경우 2.5미터로 한다. 코끼리 관리 체계에 따라 사육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지정 안전구역(safety area)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공공 접근 구역과 코끼리의 직접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 구역(stand-off area)이 설계되어야 한다.

A8.45

게이트는 충분히 견고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유압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전원과 수동 조작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유압 게이트는 코끼리의 접근 범위 밖에서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게이트의 개폐 속도는 신속해야 하고, 코끼리의 코(trunk)나 꼬리(tail)가 끼이지 않도록 긴급 정지(stop)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동 게이트의 안전한 조작 절차는 검사관에게 시연 가능해야 한다.

A8.46

전기 울타리는 주요 차단장치(primary barrier)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조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끼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전압을 유지해야 하며, 오작동 감지용 경보(failsafe alarm system)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 울타리의 완전성은 매일 점검되고, 전압 상태를 포함한 일일 점검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방사장 코끼리 측에 깊은 도랑(ditch)을 파서 차단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금지된다.

코끼리 훈련 (Elephant Training)

A8.47

모든 기관은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를 기반으로 한 코끼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장기관리계획(LTMP)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개체별로 개별 맞춤 목표(individual tailored goals)를 설정하고, 그 목표는 개체별 복지계획(IWP)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 체계 (Management Systems)

A8.48

모든 동물원은 자유접촉 관리 체계(free contact management)를 2030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해야 한다. 현재 자유접촉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보호접촉(protected contact)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행 계획과 그 이행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설명 (Additional Note)

a) 코끼리 관리 체계에는 두 가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방식이 있다.

· 자유접촉(Free Contact):

사육사와 코끼리가 물리적 장벽 없이 동일한 공간에서 직접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보통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긍정적 처벌(positive punishment) 을 혼합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여기에는 코끼리를 제한적 물리 구속 상태(restricted contact)에 두고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도 포함된다. 이 체계에서는 사육사가 코끼리의 사회적 위계(social hierarchy) 내에서 일종의 지배적 위치(social dominance) 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 보호접촉(Protected Contact):

코끼리 관리 시 긍정적 강화 훈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타깃(target) 을 이용해 코끼리의 위치와 움직임을 유도한다. 사육사 안전은 코끼리와 사육사 간의 위치 및 장벽을 통한 분리로 보장된다. 사육사는 코끼리의 사회적 위계에 개입하지 않으며, 지배적 위치를 설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나. 영국 동물원 인허가법(Zoo Licensing Act 1981)에 따른 대형유인원 관리 기준⁶⁵⁾

머리말 (Preface)

A9.1

이 기준은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오랑우탄 등 대형유인원(Great Apes) 의 복지, 건강, 그리고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들은 고도의 인지능력과 복잡한 사회구조를 가진 종으로서, 사육 시 특수한 관리 및 환경 요건이 요구된다. 모든 관리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확한 장기관리계획(LTMP) 과 개체별 복지계획(IWP) 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A9.2

대형유인원은 높은 수준의 환경 복잡성(environmental complexity)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그 복지 수준은 단순히 생존이 아닌 행동적·심리적 풍요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A9.3

대형유인원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사회적 집단(social grouping) 내에서 사육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예: 의학적 치료, 사회적 불화 등)를 제외하고는 단독 사육을 금지한

65)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for Great Britain* (London: DEFRA, 2025), A9: "Great Ape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1494272de62f4a103a828d/standards-of-zoo-practice-2025.pdf>

다.

A9.4

모든 집단은 가능한 한 자연 상태의 사회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즉, 성체 수컷, 성체 암컷, 청소년 및 미성숙 개체가 포함된 혼성 다세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 성별 또는 단일 세대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사회적 행동 기회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 자극 및 관리계획이 있어야 한다.

A9.5

사회적 불안정(예: 공격성, 분리, 고립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한 문서화된 검토(documented review)를 실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action plan)를 수립해야 한다.

A9.6

모든 사육 환경은 심리적 자극, 공간적 다양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대형유인원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지니므로, 단조로운 환경은 행동 이상(stereotypic behaviour)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사육 환경 (The Captive Environment)

A9.7

우리(Enclosure)는 실내 및 야외 공간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각 개체가 자유롭게 이동·은신·탐색·등반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 공간은 온도, 습도, 조명, 환기, 소음 수준이 종별 생리적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A9.8

야외 방사장은 충분한 높이와 입체 구조를 갖춘 등반시설(climbing structures), 그늘, 피난처, 바닥 완충재(토양, 짚, 모래 등)를 포함해야 하며, 강우·폭염·한랭 등 계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9.9

대형유인원은 자신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타 개체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스트레스 완화 및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A9.10

은신처, 플랫폼, 식사 및 휴식 공간은 집단 내 위계 차이와 개인 선호를 고려해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지배적 개체가 자원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중 접근 지점(multiple access points)을 확보해야 한다.

급식 및 영양 (Feeding and Nutrition)

A9.11

모든 대형유인원은 영양적 가치, 품질, 다양성 및 양이 종의 생리적 요구를 충족하는 식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식단은 각 개체의 연령, 건강상태, 성별, 번식상태 및 활동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A9.12

급식은 가능한 한 자연적 채집행동(foraging behaviour) 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하루 중 여러 시점에 분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장시간의 먹이 탐색 및 섭식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A9.13

먹이는 식물성 재료, 과일, 채소, 단백질 공급원(예: 견과류, 곤충,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 등)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단, 인간용 식품(가공식품, 고염·고당식품 등)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A9.14

모든 급식 활동은 영양학적 조언 및 수의학적 자문에 근거해야 하며, 식단은 정기적으로 검토·기록되어야 한다.

행동풍부화 (Behavioural Enrichment)

A9.15

대형유인원은 인지적 자극과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풍부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문제 해결 과제, 도구 사용 기회, 사회적 놀이, 환경 변화(예: 가변 구조물, 냄새, 물리적 배치) 등을 포함한다.

A9.16

풍부화 계획은 문서화된 관리계획(enrichment plan)의 형태로 수립되어야 하며, 각 개체의 성격, 사회적 지위, 연령, 건강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A9.17

풍부화의 효과는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행동 이상(stereotypy) 또는 공격성 증가 등 부정적 반응이 관찰될 경우 즉시 조정해야 한다.

건강관리 (Healthcare)

A9.18

모든 대형유인원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개체별 건강기록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A9.19

수의사는 대형유인원의 생리·행동 특성에 정통한 전문가여야 하며, 마취, 진단, 치료 등 모든 절차는 스트레스 최소화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A9.20

인수공통감염병(zoonoses) 에 대한 예방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관리자는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보호장비 착용, 격리 프로토콜을 숙지해야 한다.

공공안전 (Public Safety)

A9.21

대형유인원이 사육되는 모든 시설은 이중 차단구조(double barrier system) 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내부 방벽(enclosure barrier) 과 대중과의 거리 확보용 외부 방벽(stand-off barrier) 을 포함한다.

A9.22

공공과의 접촉은 금지되어야 하며, 단, 교육·연구 목적의 제한된 접근이 승인될 경우에도 물리적 장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A9.23

비상사태(탈출, 공격, 화재 등)에 대비하여 서면화된 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 을 수립·훈련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정기적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력 관리 (Staff Management)

A9.24

대형유인원을 관리하는 모든 사육사와 담당 인력은 해당 종의 생태, 행동, 사회구조, 인지 능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신규 인력의 경우, 대형유인원 관리에 대한 기초 교육 및 현장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경력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continued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을 통해 최신 복지·안전 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A9.25

모든 사육사와 관리 인력은 행동 관찰 및 이상행동 탐지 기술, 풍부화 프로그램의 기획·평가 역량, 응급상황 대응 및 비상 탈출 절차,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 절차 등을 숙달해야 한다.

A9.26

특히 대형유인원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민감하므로, 관리자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모든 상호작용은 신뢰 기반의 비강제적 관계(non-coercive relationship) 를 전제로 하며, 이를 문서화한 행동관리정책(Behavioural Management Policy)을 유지해야 한다.

연구 및 교육 (Research and Education)

A9.27

대형유인원과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은 윤리위원회의 승인(Ethical Review Process) 을 받아야 하며, 연구는 반드시 복지 증진 및 보전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행동 실험, 인지과제, 학습연구 등의 수행 시, 동물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도록 비침습적(non-invasive)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A9.28

교육 프로그램에서 대형유인원을 활용할 경우, 대중의 인식 제고(awareness raising) 와 보전 메시지 전달(conservation messaging) 이 핵심이어야 한다. 동물을 공연적 방식

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모든 전시 및 해설은 자연적 행동과 복지 중심의 서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보고 및 검토 (Reporting and Review)

A9.29

대형유인원의 복지, 사회적 구조, 건강, 환경, 행동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연 1회 이상 공식적으로 검토(review) 되어야 한다. 검토 보고서는 행동관찰기록, 건강검진 결과, 풍부화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사육환경의 적정성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A9.30

검토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복지 우려가 식별된 경우, 관리자는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할기관(licensing authority)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Supplementary Provisions)

A9.31

이 부속서(Appendix A9)는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for Great Britain (2025)의 일부로서, Zoo Licensing Act 1981 제8조 및 Animal Welfare Act 2006, 그리고 Animal Health and Welfare (Scotland) Act 2006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적 준수 기준(legal compliance standards)으로 간주된다.

A9.32

따라서 본 기준은 대형유인원을 보유·전시·관리하는 모든 기관(동물원, 보호시설, 연구기관 등)에 적용되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면허조건 불이행(breach of licence conditions)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 침팬지 수이사 인신보호영장 판결⁶⁶⁾ 주문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인 헤론 조제 데 산타나, 루시아노 로차 산타나 환경검찰관 및 기타 단체는 침팬지 "수이사"(학명: *Anthropopithecus troglodytes*)를 위하여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repressivo)을 청구하였다. 수이사는 살바도르 게톨리우 바르가스 동식물원(살바도르 동물원)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번 청구의 피청구권자는 환경자원부(SEMARH) 생물다양성 국장 텔모 가바자이다.

청구인들은 수이사가 심각한 누수와 결함이 있는 철창에 갇혀 있으며, 총 면적 77.56m², 높

66) Edmundo Lúcio da Cruz, "Sentença do Habeas Corpus impetrado em favor da chimpanzé Suíça," Revista Brasileira de Direito Animal 1, no. 2 (2006): 281-285, <https://periodicos.ufba.br/index.php/RBDA/article/view/10259/7315>.

이 4m의 우리와 높이 2.75m의 작은 격리공간에 제한되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이사는 자유와 사회적 환경이 필수적인 고등 유인원임에도 부적절한 환경에 갇혀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제적 동물보호 논리에 반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들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법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진화하며, 사법부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 강력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3년부터 시작된 '대형유인원 프로젝트'(Great Ape Project) 논거를 인용하며, 인간과 유인원이 진화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인신보호영장이 유인원에게도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이사를 상파울루 소로카바에 있는 GAP 보호구역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의 검토

법원은 이 사건을 브라질 최초의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하였다. 과거 STF(연방대법원)에서 새장을 벗어나려는 새를 위한 인신보호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으나, 이번 사건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본 사안의 논의를 허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자격과 법학적 논거가 충분히 학문적·사회적 토론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리 도중(2005년 9월 27일) 피보호자인 침팬지 수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의 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법률상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최종 판단

형사소송법 제659조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절차적 요건 결여)에 따라, 수이사의 사망으로 청구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청구를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라. 침팬지 세실리아 인신보호영장 판결⁶⁷⁾ 주문

법리적 검토 및 판결 이유

1. 인신보호영장의 적용 범위

인신보호영장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신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법은 사회적 현실과 윤리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확장·발전해야 하며, 오늘날 동물의 권리를 새로운 주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헌법적·환경적 관점

아르헨티나 헌법 제41조는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존중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비인간 동물, 특히 고등인지종은 단순한 재산(objecto)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고유한 권리의 보유자(subjecto)로 해석해야 한다.

세실리아의 현재 수용 상태(콘크리트 철창 속 고립)는 동물복지 원칙, 헌법상 환경권, 국제협약(생물다양성 협약, CITES 등)에 반한다.

3. 비인간 인격체 개념

법원은 "비인간 인격체(sujeto no humano)"라는 개념을 인정했다.

이는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전부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생명, 자유, 존엄의 보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과거 노예, 여성, 아이들, 장애인이 권리 주체로 인정받기까지 법의 진화가 필요했듯, 동물도 동일한 과정 속에 있다.

4. 윤리·철학적 논거

현대 윤리학과 과학은 침팬지가 자아인식, 사회성, 감정, 도구 사용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한 "사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인류의 도덕·법적 의무와 모순된다.

5. 국제적 동향

미국, 스페인, 브라질 등지에서 대형유인원의 법적 지위 확대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오랑우탄 "산드라" 사건(2014년)에서 법원이 '비인간 인격체' 개념을 인정한 선례가 존재한다.

67) Tercer Juzgado de Garantías, Mendoza, "Sentencia de Habeas Corpus de la chimpancé 'Cecilia', sujeto no humano," 3 de noviembre de 2016, PDF, Tercer Juzgado de Garantías, Mendoza, <https://www.nonhumanrights.org/wp-content/uploads/2016/12/Sentencia-de-Habeas-Corpus-de-Cecilia.pdf>.

6. 판사의 결론적 판단

세실리아는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멘도사 동물원의 현재 감금 상태는 그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신보호영장을 통한 구제가 정당하다.

따라서 세실리아는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보호구역)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판결 결론

멘도사 제3보장형사법원의 마리아 아우스트리나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청구 인용

AFADA(Animal Rights Association – Asociación de Funcionarios y Abogados por los Derechos de los Animales) 대표 파블로 부옴파드레가 제기한 인신보호(Habeas Corpus) 청구를 인용한다.

2. 세실리아의 법적 지위 인정

침팬지 세실리아는 "비인간 인격체(sujeto no humano)"로서, 법적으로 기본적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녀의 생명, 자유, 존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한다.

3. 현 수용 환경의 부적절성 선언

현재 멘도사 동물원 콘크리트 철창 속에서의 수용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종의 본성에 반하는 처우로서, 헌법과 환경법, 국제적 동물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4. 이송 명령

세실리아를 즉시 멘도사 동물원에서 브라질 소로카바에 위치한 대형유인원 보호구역(Great Ape Project Sanctuary)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한다.

이송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당국, 관련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집행 감독

법원은 이송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감독권을 유지하며, 당국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마. 오랑우탄 산드라 인신보호영장 판결⁶⁸⁾ 주문

본 법원은 니콜라스 부옴파드레(Nicolás Buompadre)가 "동물권을 위한 공무원·변호사 협회(AFADA)" 회장 자격으로, 변호인과 함께 수마트라 오랑우탄 산드라(Sandra)를 위하여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을 심리하였다.

청구인은 산드라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동물원 당국에 의해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산드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으며 사망 위험이 뚜렷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산드라의 긴급한 석방과, 즉각적인 브라질 상파울루주 소로카바 보호구역(Santuário de Sorocaba)으로의 이송을 요구하였다.

[법적 판단]

민법 제51조 및 제52조는 "인간의 특징을 가진 자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를 '사람(persona)'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본 청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 판사가 본 사건 관련 증언을 채록하여 관련 기관으로 송부한 바에 비추어, 본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원심 법원의 결정(기록 38면)을 전부 확인·확정한다.

바. 거미원숭이 에스트랄리타 인신보호영장 판결⁶⁹⁾ 주문

본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적 권리 보호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한다.

동물의 권리 주체성 확인

에콰도르 헌법 제71조에 규정된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에는 동물의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동물은 헌법상 권리의 주체(subject of rights)로 인정된다.

68) Cámara Nacional de Apelaciones en lo Criminal y Correccional - Sala VI, "Orangutana, Sandra - Habeas Corpus (2)," Juzgado de Instrucción No. 47, Buenos Aires, November 14, 2014, PDF, Poder Judicial de la Nación, <https://www.animallaw.info/sites/default/files/Orangutana%2C%20Sandra%20s%3A%20Habeas%20Corpus.pdf>.

69) Constitutional Court of Ecuador (Plenary), Final Judgment No. 253-20-JH/22 (Rights of Nature and Animals as Subjects of Rights: "Estrellita Monkey" case), January 27, 2022, PDF, Constitutional Court of Ecuador, <https://www.animallaw.info/sites/default/files/Final-Judgment-Estrellita-w-Translation-Certification.pdf>.

동물의 권리 내용

동물은 단순히 생명 유지 이상의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감정적·인지적 존재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수행할 권리와 종 고유의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잔혹, 죽음을 야기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곧 자연의 권리 침해를 구성한다.

에스트렐리타 사건의 판단

에스트렐리타는 불법적으로 포획되어 인간 가정에서 18년간 사육되었다.

이후 국가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동물원 격리시설로 옮겨졌고, 적절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는 에스트렐리타의 권리(생명, 신체적·정신적 온전성, 종 특유의 행동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국가의 책임

국가는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

국가의 관리 소홀과 적절한 조치 부재는 이번 사건에서 헌법상 자연과 동물의 권리 위반을 초래하였다.

향후 지침

입법부와 행정부는 본 판결을 근거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동물권 침해를 심리·구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 수단(acción de protección, habeas corpus 등)을 인정한다.

판결 선언

따라서 본 재판소는 본 사건을 통해, 동물은 헌법상 권리 주체임을 선언하고,

인간이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박탈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71조 자연의 권리 조항 위반임을 확인한다.



비매품/무료

05490



9 791198 565372

ISBN 979-11-985653-7-2 (PDF)